



학사규정

숙명여자대학교 학칙
숙명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학부수업 및 휴보강관리 내규
학부성적관리에 관한 내규
전공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교양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학생자율설계전공 운영 내규

숙명여자대학교 학칙

■ 전면개정 : 1981년 8월 1일/2013년 5월 11일

■ 개 정 : 2022년 4월 22일

■ 관리부서 : 기획처 기획팀

■ 관련부서 : 교무처 학사팀/ 입학처 입학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숙명여자대학교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및 교육목적) ① 교육이념은 정숙, 현명, 정대를 지향하는 여성교육과 민족의 정통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민족교육의 실현이라는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능력 있는 여성을 양성하고 국가와 민족,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지도자를 배출하는 데에 있다.

② 교육목적은 국가와 민족,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지도자 배출이라는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창의, 자주, 봉사 정신을 가진 전문인을 육성하는 데에 있다.

제3조(교육조직의 설치) ①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조직으로 대학,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 등”이라 한다)을 두고, 세부조직으로 학부·학과·전공을 둔다. 다만, 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학부(이하 “독립학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교육조직을 신설,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학문의 특성, 전문성 및 독립성, 교육조직의 일반적 관례, 사회적 수요 그리고 본교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조직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전임교원, 교육시설 및 학생의 수 등을 적정히 갖추어야 한다.

④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내에 동일 명칭의 학부·학과·전공을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제4조(학위과정의 설치) ① 대학 및 독립학부의 학부·학과·전공에 두는 학사학위과정은 본교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 학문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 등에 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자체평가) ① 본교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및 시설·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연구년) 전임교원이 일정 기간 동안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년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계약학과)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부·학과·전공(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및 운영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③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산학협력기관 등) ① 본교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14.8.20.)

제2장 조직

제9조(총장) 총장은 본교를 대표하고 학교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대학·대학원 등) ① 본교에 대학으로 문과대학·이과대학·공과대학·생활과학대학·사회과학대학·법과대학·경상대학·음악대학·약학대학·미술대학·기초교양대학, 글로벌융합대학을 두며, 독립학부로 글로벌서비스학부·영어영문학부·미디어학부를 둔다. 다만, 독립학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28./2016.4.30./2021.03.24)

② 본교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 경영전문대학원, 그리고 특수대학원으로 교육대학원, TESOL·국제학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심리치료대학원, 인적자원개발대학원, 음악치료대학원, 정책대학원, 원격대학원을 둔다. (개정 2017.7.25.)

③ 대학원 등의 기구와 운영, 학칙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학부·학과·전공의 편성과 입학정원) ① 학부·학과·전공의 편성과 입학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입학정원의 예외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한다.

② 학생은 입학 당시의 학부·학과·전공에 소속된다. 다만, 기초공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2학기를 이수한 후에 공과대학 내의 학부·학과·전공 중에서 소속 학부·학과·전공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4.)

③ 학부·학과·전공이 개편된 경우(명칭 변경은 제외) 개편 전에 입학한 학생은 개편체제 시행학년도부터 4년간은 개편 전 소속 학부·학과·전공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개편된 학부·학과·전공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학과·전공 특성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개편 시행시점에 해당 재적생의 희망에 따라 소속을 개편된 학부·학과·전공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④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부·학과·전공에 세부전공을 둘 수 있으며, 세부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4.)

제12조(리더십교양학부) (삭제 2016.4.30.)

제13조(학장·대학원장 등) 본교의 각 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다만, 독립학부에는 독립학부장을 둔다.

제14조(행정조직) 본교의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1.26.)

제15조(부속기관 등) ① 본교의 부속기관, 부설기관, 부설연구기관의 설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4.30./ 2017.1.26./2019.12.14)

② (개정 2014.2.14./ 2016.3.1./삭제 2017.1.26.)

③ (개정 2014.2.14./ 2015.1.30./2016.3.1./2017.1.26./2017.6.4./2017.8.22./삭제 2019.12.14)

④ (삭제 2019.12.14.)

제16조(교무위원회) ① 본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본교 직제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5.9. /2017.6.4. /2017.10.28./2019.1.5.)

③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무 및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
2. 교수회에 부치는 안건 중 필요한 사항
3.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과 그 밖에 본교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조직의 신설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2.03.)

⑤ 교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대학평의원회) 본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18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교에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교수회) ① 본교 학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두고, 교수회는 전체교수회와 대학교수회, 독립학부교수회, 학부·학과·전공 교수회로 나눈다.

② 교수회는 정년과정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대학교수회는 학장이, 독립학부교수회는 독립학부장이, 학부·학과·전공 교수회는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총장은 대학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은 재적교수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체교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교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입학,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시험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원 평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사에 관하여 총장이 교수회에 부치는 사항

⑤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20조(교원의 재임용) 본교 교원의 재임용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교원의 교수시간) ① 정년과정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15학점에 해당하는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정년과정 전임교원 외의 교원의 교수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학사운영

제1절 학사운영일반

제22조(수업연한) ① 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되,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 교육은 2년으로 하고,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정해진 모든 과정을 조기 이수한 학생(편입학생 및 학사편입 학생 제외)에게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업연한을 1년(2학기)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③ 졸업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 중 계속하여 수학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계속수학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6./2019.07.28.)

제23조(학년도와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이를 제1학기과 제2학기과 나눈다.

② 1학기 개시일은 3월 1일, 2학기 개시일은 9월 1일로 한다. 다만, 1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개정 2017.10.28.)

③ 제1항의 학기 외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계절학기를 두고, 계절학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계절학기의 총 수업시간은 정규학기 수업시간과 동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과 운영상 필요할 경우 학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학점당 수업시간을 준수하여 집중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집중수업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2.6..)

제25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창학기념일(5월 22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로 한다.

② 휴가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 등을 할 수 있다.

제2절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제26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강 이전으로 한다.

제27조(입학자격) 각 대학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28조(편입학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해당 학부·학과·전공의 편입학 여석이 있을 경우 총장이 정한 전형을 거쳐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1. 국내외 대학에서 2학년 수료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사람. 다만,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국내외의 대학에서 30학점 또는 6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2.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3. 「평생교육법」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편입학에 관한 일정, 전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재입학 여석 내에서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 전에 적을 둔 학부·학과·전공이 주간 또는 야간으로 전환되었거나 모집단위의 소속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편된 학부·학과·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하며, 재입학 전에 적을 둔 학부·학과·전공이 폐지된 경우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② 징계에 의해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을 할 수 없다. 그 외 재입학 제한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6./2020.02.01)

③ 성적경고누적에 의한 제적 학생은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0조(입학지원 서류와 수험료) 각 대학에 입학할 지원자는 입학지원서와 총장이 따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입학전형관리) ① 입학할 학생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방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 입학전형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선발한다.

② 일반전형은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하고,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의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③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모집단위, 모집인원, 입학전형의 기준과 방법, 학생선발일정 등을 포함한 대학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④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삭제 2019.09.28.)

⑥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30.)

제32조(입학허가) 총장은 해당 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요청으로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9.09.28.)

제32조2(입학취소)(조신설 2019.09.28.)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졸업 후에라도 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서류와 입학금,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입학 및 졸업의 취소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 2.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각종 증빙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기재 또는 해당 모집요강에서 정한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 3. 평가자와의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개입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경우

제33조(등록금 및 구비서류)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34조(개인정보제공)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학사안내, 학생지도 및 장학업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본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전과) ① 소속 학부·학과·전공의 변경(이하 “전과”라 한다)은 학부·학과·전공 입학정원의 시행세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학과 및 입학전형에 대해서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7.1.26.)

②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다음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절 휴학·자퇴 및 제적 등

제38조(휴학) ① 휴학하려는 학생은 휴학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휴학할 수 있다.

② 한 번의 휴학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7./2016.8.20./2019.12.14.)

③ 통상휴학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19.12.14.)

④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각각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군입대로 인한 휴학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12.14.)

⑤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호변호변경/개정 2019.12.14.)

제39조(복학) 복학은 해당 학기의 수업일수가 1/4을 경과하기 이전인 경우에 허가한다.

제40조(자퇴) 퇴학하려는 학생은 보증인 연서로 퇴학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1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휴학연장절차를 밟지 않고 복학하지 않은 학생
2. 타교에 입학한 학생
3. 성적이 불량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는 학생
4.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

제42조(복적) 제적된 학생이라도 사정을 고려하여 총장이 복적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절 교육과정 및 졸업 등

제43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한다. 교양과목에는 교양필수, 교양핵심선택, 일반교양선택 과목을 두고, 전공과목에는 학부·학과·전공의 필요에 따라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을 둘 수 있다.

② 각 학부·학과·전공과정에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연계교과목을 둘 수 있으며, 연계교과목은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과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 학부·학과·전공의 전공교육과정 외에 별도 연계전공교육과정을 설치하고 해당분야에 필요한 전공과목을 둘 수 있다.

④ 신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을 위하여 특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과정, 특별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⑥ 각 학부·학과·전공은 주제별 전공과목으로 구성된 모듈과 복수의 모듈로 구성된 전공트랙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02.03.)

제44조(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 ①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대학원 해당학과 석사과정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신청 제한학점 외로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7.12.30.)

②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5조(개설 교과목과 강의시간표) 개설 교과목 및 강의시간표는 매학기 수업개시 전에 독립학부 및 학부·학과·전공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46조(수업과 학점) ①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동안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 수업 등 교과 운영상 필요한 경우 1학기 동안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② 수업은 교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결강한 경우에는 보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타 대학교 등에서의 수학기간 및 취득학점) ①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은 국내외 교육기관에 파견된 교환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본교 교과목 구분별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되,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이 교과목 구분별 졸업학점의 1/2 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③ 특별한 경우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대학에서의 학점취득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2항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④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8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19학점(교육학부 및 약학대학 학생은 2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나 연간 36학점(교육학부 및 약학대학 학생은 50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매학기 3학점까지 초과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5.9.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학기의 성적평점평균이 3.70 이상인 학생은 다음 학기 취득기준학점 외에 3학점까지 더 취득할 수 있다.

③ 매계절학기에는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④ 특별과정에 의한 취득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제49조(졸업에 필요한 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은 인문사회계열 125학점,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 130학점(약학대학은 160학점) 이상으로 하며, 그 중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30./2016.5.18.)

② (삭제 2014.8.20.)

제50조(제1전공 이수 의무) ① 학생은 소속 학부·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제1전공 심화과정 또는 다전공과정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2017.6.4.)

② 복수전공·연계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지 않고 제1전공만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학생은 반드시 심화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30.)

제51조(복수전공 및 부전공) ① 재학 중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 전공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복수전공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개정 2019.12.14.)

1. 일반전공: 제1전공 외 다른 학부·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함 (신설 2019.12.14.)

2. 연계전공: 2개 이상 학과의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개설한 융복합과정을 이수함 (신설 2019.12.14.)

3. 학생자율설계전공: 학생이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전공을 이수함 (신설 2019.12.14.)

② 복수전공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제55조를 이행하여 합격한 학생에게는 해당 학부·학과·전공의 학위를 수여하고,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 다만, 연계전공 교육과정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시행세칙에서 정한 전공학점 이상 이수하면 복수전공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4.2.14.)

③ 재학 중 시행세칙에서 정한 일부전공을 제외한 학부·학과·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02.03.)

④ 부전공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산입하며,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

⑤ 편입학생이 편입학 전에 적을 둔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중 일부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점에 포함 할 수 있다.

⑥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2조(연계전공) ① 재학 중 각 연계전공과정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② 각 연계전공과정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초교양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초교양대학장이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5.)

제53조(학·석사 연계과정) ①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상호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2.30.)

② 학·석사 연계과정의 자격기준과 운영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4조(학년별 수료 및 진급) ①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으며, 학년별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8.20./2015.1.30./2016.5.18./2016.8.20.)

학년	이수학기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
제1학년	2학기	32학점	33학점
제2학년	4학기	63학점	65학점
제3학년	6학기	94학점	98학점(약학대학 44학점)
제4학년	8학기	125학점	130학점(약학대학 88학점)
제5학년	약학대학 10학기	해당없음	약학대학 132학점
제6학년	약학대학 12학기		약학대학 160학점

② 각 학년의 진급은 성적취득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제55조(졸업논문 및 졸업자격인증제) ①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구분에 따라 시행세칙에서 정한 학점을 모두 충족하여 각 과정별로 수료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합격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다만,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제1호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제4호는 외국인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2.14)

1. 졸업논문 또는 각 학부·학과·전공 교수회에서 결정한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별도의 과제
2. (삭제 2018.2.6.)
3. (삭제 2019.12.14.)
4. 한국어능력인증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수료로 처리하며,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2.14./ 2014.8.20./2019.07.28)

③ 제1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6조(우수능력 인증제) (삭제 2017.6.4.)

제57조(졸업) ① 학칙에서 정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55조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합격한 학생에게는 별지 서식 제1호 및 제5호의 증서에 의하여 별표 4의 학사학위를 해당 학기 말에 수여한다. (개정 2019.1.5.)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6학기 이상 등록하고 매학기 성적평점평균과 총 성적평점평균이 3.70 이상인 학생과,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으로서 총 성적평점평균 3.30 이상인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③ 제1항 요건을 구비한 학생이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면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제58조(복수학위제) 본교와 외국의 대학교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양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양교의 졸업요건을 갖추면 각각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5절 시험과 성적

제59조(시험) ① 각 교과목의 평가를 위하여 중간시험, 학기말시험 및 수시시험을 실시한다.

② 영어인증에 관한 시험 및 그 밖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0조(추가시험) ①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학생은 그 교과목의 시험 전후

1주일 이내에 절차를 밟아 사유서를 제출하고 추가시험을 치를 수 있다.

② 추가시험은 해당시험 전후 1주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과목의 최종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6.4.)

제61조(결석에 대한 제재) 매학기 총 수업시간의 1/4 이상을 결석할 경우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한다.

제62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험성적·과제평가 및 출석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다.

② 학업성적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성 적	평 점	성 적	평 점
A+	4.3	C+	2.3
A0	4	C0	2
A-	3.7	C-	1.7
B+	3.3	D+	1.3
B0	3	D0	1.0
B-	2.7	D-	0.7
		F	0.0

다만, 교과목 성격에 따라 학업성적의 평점을 P(합격)/F(불합격)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③ 성적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3조(취득학점의 인정) ① 각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D-급 이상을 학점취득으로 인정한다.

② 교육과정 개정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의 경우, 그 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성적 포기는 취득성적이 C+ 이하인 과목에 한한다.

③ 교육과정 개정으로 전공필수과목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전공선택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④ 제1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간에 동일과목의 학점을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복수전공 중 연계전공과 학생자율설계전공에서만 각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학점 일부를 중복하여 인정한다. (개정 2019.12.14.)

⑤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이 이수한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은 학부과정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학·석사 연계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에는 학부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4조(성적경고) ① 매학기 학업성적평점 평균이 1.70 미만인 학생에게는 성적경고를 한다.

② 재학 중 연속하여 3회의 성적경고(학사경고 포함)를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 다만, 졸업대상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예외로 한다.

제65조(학점 및 졸업취소) ①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행위가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② 졸업생으로서 부정행위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및 학사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9. 9.)

제6절 위탁생, 외국인학생 및 시간제 등록생 등

제66조(위탁생) ① 정부 각 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탁생이 수학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제적된다.

③ 위탁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학칙을 따른다.

제67조(외국인 학생) ① 외국인 학생에게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학생으로서 각 대학에서 정해진 모든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68조(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9조(시간제 등록생) ① 일반 사회인의 재교육 및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생정원 이외에 시간제 등록생을 전형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② 시간제 등록생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 이내를 선발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사범계학과와 약학부에서는 선발을 하지 않는다.

- ③ 시간제 등록생 지원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 ④ 시간제 등록생은 필답 또는 면접고사를 거쳐 매학기 선발한다.
- ⑤ 시간제 등록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0조(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이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양학점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사람
 4. 학사학위소지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전공분야에서 전공 48학점 이상을 본교에서 취득한 사람
- ② 제1항 제3호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 등록으로 취득한 학점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을 포함한다.
- ③ 학위의 종류와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또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서식 제4호 학위증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 ④ 학점인정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1조(공개강좌) ① 본교에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시키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②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 ③ 공개강좌 개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학생

제1절 장학금

- 제72조(장학금) ①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품행, 학업성적, 사회봉사활동 등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9.28.)
- ② 장학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학생활동

- 제73조(총학생회) ① 학생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학칙에서 정하는 학생자치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총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4조(조직승인)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5조(활동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76조(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의 발행, 편집 및 배포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7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과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78조(학생지도) 학생의 학업 및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부·학과·전공에 지도교수를 두고, 학생조직 및 학생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처에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제3절 포상과 징계

제79조(포상)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학생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0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칙 등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 ② 징계 대상 학생은 학생지도위원회에 징계와 관련한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학생지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학생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 ④ 학생징계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등록금

제81조(등록금) ① 신입생 및 편입학생은 입학할 때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학 합격자 발표일 현재 본교 재적생(해당 학기 졸업예정자는 제외한다)으로 약학대학에 편입학한 학생에게는 입학금을 면제한다.

- ② 재입학생은 해당 학년도 입학금의 반액과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재학생은 매학기 등록을 할 때에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2조(복학자, 휴학자 및 자퇴자의 등록금) ① 복학이 허가된 학생은 그 학기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휴학, 자퇴가 허가된 학생은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학기 개시일로부터 휴학이나 자퇴하는 학생 중 그 학기의 등록금 미납자는 제85조 제2항에 따라 공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3조(실험실습비) 실험과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84조(등록금의 고지)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은 등록기간 전에 공고한다.

제85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학기에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일체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1.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입학 포기사를 표시한 경우
 2.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학생이 휴학할 경우

제6장 학칙개정

제86조(학칙개정)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1주일 이상 공고한 후 규정위원회·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 후, 총장이 이를 확정·공포한다. (개정 2014.5.9.)

제7장 학교기업 (장신설 2014.8.20.)

제87조(학교기업 설치) ① 본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해 별표 6과 같이 숙명여자대학교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내로 한다.

제88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9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및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20% 범위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10% 내에서 지급하며, 연 보수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③ 학생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우선 지급하되,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본교 「지식재산권 규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⑤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90조(회계연도) 학교기업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1조(운영세칙)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1

①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② 본 개정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학칙 제 3조 제 1항, 제41조 제 2항, 제3항의 규정은 198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본 개정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학칙 제20조 제 1항, 제33조 제 2항, 제34조, 제41조 제 4항의 규정은 198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본 개정학칙은 198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학칙 제34조는 198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9조의 규정은 198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1983학년도이전 입학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정 전의 학칙에 의한다.

③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 정원령(대통령령 제11292호 83. 12. 30) 부칙 제 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13조 제 1항 및 제3항(학사경고 제적자와 중도수료자 및 재학년 한 초과자 제외)과 제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3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5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3조는 198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대학학생 정원령(대통령령 제11513호 84. 9. 22) 제 3조 제 3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미등록 등으로 제적된 자가 제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4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졸업정원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 정원령(대통령령 12042호 1986. 12. 31)부칙 제 2항에 의거 학칙 제 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졸업정원이 감축된 해당학과의 졸업정원은 별표 3에 따른다.

부칙 8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 정원령(대통령령 제12237호 87. 8. 29) 부칙 제 3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13조 제 1항 및 제 3항 (재학한한 초과자 제외)과 제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9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학칙 중 제 3조 규정에 의한 별표 1중 입학정원은 198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종전의 졸업정원은 1990학년도까지 유효하다.

2. 이 개정학칙 중 제35조 규정은 1991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하며, 1990학년도 이전의 졸업예정자 중 졸업정원에 포함되거나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졸업정원에서 제외되고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3)에 의한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칙 10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종전의 도서관학과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문헌정보학과 학생으로 본다.

2. 학칙 제41조의 성적경고는 199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11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3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 정원령 (대통령령 제13875호, 1993. 4. 2) 제 2조 제 3항 제 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2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3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3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3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산업미술과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산업디자인과 학생으로 본다.

부칙 14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중 제32조의 2의 복수전공규정은 199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15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6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7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8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하되, 199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1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은 199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22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37조, 제38조의 규정은 199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23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8년 1월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0조 제2항 및 제53조 제2항의 규정은 1997년 8월14일 이전에 휴학한 학생과 1997년 8월14일 이후에 휴학한 학생 중 개강후 4주 이내에 휴학한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24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8년 8월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37조(전공심화과정)의 규정은 1998학년도 졸업자(1999년 2월,8월졸업)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제41조(졸업) 제2항의 규정은 2000학년도 이후 졸업자(2001년 2월이후 졸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5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6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7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 제40조 제1항 2호는 2000년 3월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8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9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0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 제40조 제1항 2호는 2001년 3월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31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 제5조, 제6조, 제7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32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3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제35조 제2항, 제36조 3항, 제37조, 제40조, 제1항3호는 2001년 3월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34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5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 제6조는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36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 제30조 제6항, 제33조 제4항, 제35조 제1항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37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8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9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1>입학인원표 및 <별표2>학사학위 종류의 개정사항은 2003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0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입학인원표의 개정사항은 200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1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2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3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4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5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6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사항은 2005학년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사회교육대학원 신설은 특수대학원 학칙 해당사항의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47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8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9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0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1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단, 개정학칙 제5조 및 제6조 ①항의 별표 1 입학정원표는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52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3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4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5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56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7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8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9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0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1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2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3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4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5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 ④항 20호 개정사항은 2007년 9월 1일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66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6조의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67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1>입학인원표의 개정사항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시행하며, 각 전공별 입학정원조정은 약학대학 6년제 전환에 따른 한시적 조치이므로 6년제 약학대학 신입생 모집재개 가능시점에 타전공에 증원된 입학정원을 약대정원으로 모두 환원한다. <별표2>학사학위의 종류의 개정사항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시행한다.

부칙 68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 ①항 10호 개정사항은 2009년 4월 20일자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별표1> 입학인원표의 개정사항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시행하며, 각 전공별 입학정원조정은 약학대학 6년제 전환에 따른 한시적 조치이므로 6년제 약학대학 신입생 모집재개 가능시점에 타전공에 증원된 입학정원을 약대정원으로 모두 환원한다.

부칙 69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0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1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2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9조 1항, 제35조, 제36조 3항, 제37조의 개정사항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5조, 제6조 제1항 <별표 1>, 제30조제 4항의 개정사항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73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4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0조 제1항 개정사항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75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6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내용은 201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③ (경과조치) 제3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46조 제2항 및 <별표 2> 학사학위의 종류 중 개정내용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77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8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9

①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제10조 및 <별표5> 제6호의 개정사항은 2011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제33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제50조 제2항 및 <별표 5> 제1호 내지 제2호의 개정사항은 2010년 12월 2일 이후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한다.

부칙 80

-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교육학부 학생에게는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 81

-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34조, 제39조, 제49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82

-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서식 1의 학위증, 서식 2의 수수료증, 서식 3의 시간제등록생 학위증의 내용 중 전공 및 학위 표기란은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종전의 교육과정에 따라 심화과정을 이수한 경우 종전의 학위증 규정을 적용하여 심화과정을 표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학칙은 2013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학교육인증과정은 2014년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학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4조, 제15조의 개정사항은 2014년 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의 유아원 폐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55조 제1항 제4호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서식3, 서식4의 개정사항은 2013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학칙은 201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4> 학사학위의 종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학칙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9조 제2항(졸업초과학점)의 삭제에 따른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한 경과조치는 학칙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② 제81조 제1항의 약학대학 입학금 면제에 관한 사항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1.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제54조 제1항의 개정사항과 <별표 4> 학사학위의종류, (서식 1)학위증, (서식 2)수수료증, (서식 3)시간제등록생 학위증의 개정사항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2.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별표2>, <별표4>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8조제1항은 2016학번부터 적용한다. 2015학번 이전 학생은 매학기 21학점(교육학부 및 약학대학 학생은 2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나 연간 39학점(교육학부 및 약학대학 학생은 50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다.

부 칙<2016.1.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9조 1항, 제54조 1항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표2>, <표4>의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8.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8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9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6.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6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0조제2항 전문대학원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6년 8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10조제2항 특수대학원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8.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0.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2월 6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5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8년 8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1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6조의 개정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4.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 전공선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9. 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9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입학 취소된 자는 이 학칙에 의한 입학 취소된 자로 본다.

부 칙<2019.12.1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38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개정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 제5항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부터 적용한다.

③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2.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9조 제2항, <별표4>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3.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8.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4>의 연계전공-글로벌지식경영전공은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자에 한하여 전공선택 가능하며,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2.0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1조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3.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4.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대학· 독립학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학과 및 학부	입학 정원						
소계		152		149		149		152
법과 대학	법학부	108	법학부	105	법학부	105	법학부	108
소계		108		105		105		108
경상 대학	경제학부	68	경제학부	66	경제학부	66	경제학부	68
	경영학부	141	경영학부	137	경영학부	137	경영학부	141
소계		209		203		203		209
음악 대학	피아노과	32	피아노과	31	피아노과	31	피아노과	32
	관현악과	36	관현악과	35	관현악과	35	관현악과	36
	성악과	26	성악과	26	성악과	26	성악과	26
	작곡과	25	작곡과	25	작곡과	25	작곡과	25
소계		119		117		117		119
약학 대학	약학부	80	약학부	80	약학부	80	약학부	80
소계		80		80		80		80
미술 대학	시각·영상디자인과	34	시각·영상디자인과	33	시각·영상디자인과	33	시각·영상디자인과	34
	산업디자인과	27	산업디자인과	27	산업디자인과	27	산업디자인과	27
	환경디자인과	26	환경디자인과	26	환경디자인과	26	환경디자인과	26
	공예과	34	공예과	33	공예과	33	공예과	34
	회화과	27	회화과	27	회화과	27	회화과	27
소계		148		146		146		148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	· 글로벌협력전공	21						
	· 앙트러프러너십전공	18						
소계		39		39		39		39
영어 영문 학부	· 영어영문학전공	81	· 영어영문학전공	79	· 영어영문학전공	79	· 영어영문학전공	81
	· 테슬(TESL) 전공	21						
소계		102		100		100		102
미디어 학부	· 미디어학전공	52	· 미디어학전공	51	· 미디어학전공	51	· 미디어학전공	52
소계		52		51		51		52
총계		2,190		2,150		2,180		2,170

대학· 독립학부	2025학년도		2026학년도	
	학과 및 학부	입학 정원	학과 및 학부	입학 정원
문과 대학	한국어문학부	63	한국어문학부	63
	역사문화학과	32	역사문화학과	32
	프랑스어· 문화학과	28	프랑스어· 문화학과	28
	중어중문학부	73	중어중문학부	73
	독일어· 문화학과	22	독일어· 문화학과	22
	일본학과	34	일본학과	34
	문헌정보학과	26	문헌정보학과	26
	문화관광외식학부	(68)	문화관광외식학부	(68)
	· 문화관광학전공	34	· 문화관광학전공	34
	· 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전	34	· 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전	34

대학· 독립 학부	2025학년도		2026학년도	
	학과 및 학부	입학 정원	학과 및 학부	입학 정원
	공 교육학부	48	공 교육학부	48
소계		394		394
이과 대학	화학과	40	화학과	40
	생명시스템학부	48	생명시스템학부	48
	수학과	34	수학과	34
	통계학과	41	통계학과	41
	체육교육과	26	체육교육과	26
	무용과	33	무용과	33
소계		222		222
공과 대학	회공생명공학부	63	회공생명공학부	63
	인공지능공학부	70	인공지능공학부	70
	첨단소재·전자융합공학부	90	첨단소재·전자융합공학부	90
	·지능형전자시스템전공		·지능형전자시스템전공	
	·신소재물리전공		·신소재물리전공	
	소프트웨어학부	100	소프트웨어학부	100
	·컴퓨터과학전공		·컴퓨터과학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	
	기계시스템학부	50	기계시스템학부	50
기초공학부	20	기초공학부	10	
		393		383
생활 과학 대학	가족자원경영학과	22	가족자원경영학과	22
	이동복지학부	49	이동복지학부	49
	의류학과	31	의류학과	31
	식품영양학과	40	식품영양학과	40
소계		142		142
사회 과학 대학	정치외교학과	32	정치외교학과	32
	행정학과	30	행정학과	30
	홍보광고학과	44	홍보광고학과	44
	소비자경제학과	24	소비자경제학과	24
	사회심리학과	22	사회심리학과	22
소계		152		152
법과 대학	법학부	108	법학부	108
소계		108		108
경상 대학	경제학부	68	경제학부	68
	경영학부	141	경영학부	141
소계		209		209
음악 대학	피아노과	32	피아노과	32
	관현악과	36	관현악과	36
	성악과	26	성악과	26
	작곡과	25	작곡과	25
소계		119		119
약학 대학	약학부	80	약학부	80
소계		80		80
미술 대학	시각·영상디자인과	34	시각·영상디자인과	34
	산업디자인과	27	산업디자인과	27
	환경디자인과	26	환경디자인과	26
	공예과	34	공예과	34
	회화과	27	회화과	27
소계		148		148
글로벌 별서	·글로벌협력전공	21	·글로벌협력전공	21

대학· 독립 학부	2025학년도		2026학년도	
	학과 및 학부	입학 정원	학과 및 학부	입학 정원
비스 학부	· 앙트러프러너십전공	18	· 앙트러프러너십전공	18
소계		39		39
영어 영문 학부	· 영어영문학전공	81	· 영어영문학전공	81
	· 테슬(TESL) 전공	21	· 테슬(TESL) 전공	21
소계		102		102
미디 어학 부	· 미디어학전공	52	· 미디어학전공	52
소계		52		52
총계		2,160		2,150

※ 2009학년도 입학정원: 약학대학 6년제 전환에 따라 약학대학 입학정원 80명을 한시적으로 문과대학(인문학부, 문화관광학부 문화관광학 전공, 영어영문학부), 이과대학(자연과학부, 생명과학부, 수학·통계학부, 정보과학부 컴퓨터과학전공, 멀티미디어과학전공), 생활과학대학(가정·아동복지학부, 생활과학부), 사회과학대학(정치행정학부, 언론정보학부), 경상대학(경제학부)에 각각 전환함.

※ 2010학년도 입학정원: 약학대학 6년제 전환에 따라 약학대학 입학정원 80명을 한시적으로 문과대학(인문학부, 문화관광학부 문화관광학전공, 영어영문학부), 이과대학(자연과학부, 생명과학부, 정보과학부 컴퓨터과학전공, 멀티미디어과학전공), 생활과학대학(가정·아동복지학부, 생활과학부), 사회과학대학(정치행정학부, 언론정보학부), 경상대학(경제학부), 글로벌서비스학부(글로벌협력전공, 앙트러프러너십전공)에 각각 전환함.

※ 2011학년도 테슬(TESL)전공 (24)는 영어영문학부 122명안에 포함된 숫자임.

※ 2022~2023학년도 입학정원 : 약학대학 통합 6년제 전환에 따라 문과대학(한국어문학부, 역사문화학과, 중어중문학부, 일본학과, 문화관광학부(문화관광학전공, 르꼬르동블루의식경영전공)), 이과대학(화학과, 생명시스템학부, 수학과, 통계학과, 무용과), 생활과학대학(아동복지학부,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사회과학대학(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홍보광고학과), 법과대학(법학부), 경상대학(경제학부, 경영학부), 음악대학(피아노과, 관현악과), 미술대학(시각·영상디자인과, 공예과), 영어영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 미디어학부(미디어학전공)의 정원을 조정함. (신설 2020.03.31.)

※ 2024학년도 입학정원 : 공과대학(기초공학부)를 8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며, 약학대학 통합 6년제 전환으로 인해 2022~2023학년도 입학정원을 조정한 문과대학(한국어문학부, 역사문화학과, 중어중문학부, 일본학과, 문화관광외식학부(문화관광학전공, 르꼬르동블루의식경영전공)), 이과대학(화학과, 생명시스템학부, 수학과, 통계학과, 무용과), 생활과학대학(아동복지학부,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사회과학대학(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홍보광고학과), 법과대학(법학부), 경상대학(경제학부, 경영학부), 음악대학(피아노과, 관현악과), 미술대학(시각·영상디자인과, 공예과), 영어영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 미디어학부(미디어학전공)의 정원을 2021학년도와 동일하게 재조정함. (신설 2020.03.31./개정 2022.04.22.)

※ 2023학년도 첨단분야 학과로 신설되는 학과는 아래와 같다. (신설 2022.04.22.)

- (기존)ICT융합공학부-IT공학전공(60명) → (변경) 인공지능공학부(70명)
- (기존) ICT융합공학부-전자공학전공(40명), ICT융합공학부-응용물리전공(40명) → (변경) 첨단소재·전자융합공학부(지능형전자시스템전공, 신소재물리전공) (90명)
- (기존) 소프트웨어학부-컴퓨터과학전공(60명), 소프트웨어학부-소프트웨어융합전공(30명) → (변경) 소프트웨어학부(컴퓨터과학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 (100명)

※ 2023학년도 첨단분야 학과 신설에 따라 2023학년도 입학정원이 2,150명에서 2,180명으로 한시적으로 증원되

있으며, 증원된 30명의 입학정원은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까지 공과대학 기초공학부에서 매년 10명씩 감
원하여 조정함. (신설 2022.04.22.)

<별표 3> 세부전공 운영 학부 및 세부전공 (개정 2019.07.28./삭제 2019.12.14)

<별표 4> 학사학위의 종류(개정 2013.8.17./2014.5.9./2014.8.20./2015.1.30./2015.2.28./2015.9.9./2016.1.27./2016.5.18./2017.6.4./2018.11.9./2020.02.01./2020.08.27)

대학 독립학부	학부 . 학과 . 전공	학위종류(전공)	대학 독립학부	학부 . 학과 . 전공	학위종류 (전공)
문과 대학	한국어문학부	문학사(한국어문학전공)	법과 대학	법학부	법학사(법학전공)
	역사문화학과	문학사(역사문화학전공)		경상 대학	경제학부
	프랑스언어 . 문화학과	문학사(프랑스언어 . 문화학전공)	경영학부	경영학사(경영학전공)	
	중어중문학부	문학사(중어중문학전공)	음악 대학	피아노과	음악학사(피아노전공)
	독일언어 . 문화학과	문학사(독일언어 . 문화학전공)		관현악과	음악학사(관현악전공)
	일본학과	문학사(일본학전공)		성악과	음악학사(성악전공)
	문화관광외식학부 문화관광학전공	문학사(문화관광학전공)		작곡과	음악학사(작곡전공)
	문화관광외식학부 리조트동블루 외식경영전공	문학사 (리조트동블루 외식경영전공)	약학 대학	약학부	약학사(약학전공)
	교육학부	문학사(교육학전공)		미술 대학	시각 영상디자인과
문학정보학과	문학사(문학정보학사 (문학정보학전공))	산업디자인과	디자인학사 (산업디자인전공)		
이과 대학	화학과	이학사(화학전공)	환경디자인과		디자인학사 (환경디자인전공)
	생명시스템학부	이학사(생명시스템학전공)	공예과		미술학사(공예전공)
	수학과	이학사(수학전공)	회화과		미술학사(회화전공)
	통계학과	이학사(통계학전공)	글로벌 서비스 학부		글로벌협력전공
	체육교육과	체육학사(체육교육전공)		앙트러프러너십전공	앙트러프러너십학사 (앙트러프러너십전공)
무용과	무용학사(무용전공)	영어영 문학부	영어영문학부	문학사(영어영문학전공)	
공과 대학	회공생명공학부		공학사(회공생명공학전공)	테슬전공	문학사(테슬전공)
	컴퓨터과학전공	공학사(컴퓨터과학전공)	미디어 학부	미디어학부	문학사(미디어학전공)
	소프트웨어융합전공	공학사(소프트웨어융합전공)		연계전공	공공인재학전공
	IT공학전공	공학사(IT공학전공)	국제한국어교육전공		문학사(국제한국어교육전공)
	전자공학전공	공학사(전자공학전공)	글로벌비즈니스개발전공		글로벌비즈니스개발학사 (글로벌비즈니스개발학전공)
	응용물리전공	공학사(응용물리전공)	글로벌지식경영전공		글로벌지식경영학사 (글로벌지식경영전공)
생활 과학 대학	가족자원경영학과	문학사(가족자원경영학전공)	글로벌환경학전공		환경학사(글로벌환경학전공)
	아동복지학부	문학사(아동복지학전공)	금융공학전공		금융공학사(금융공학전공)
	의류학과	이학사(의류학전공)	기술인문융합전공		기술인문융합학사(기술인문융 합전공)
	식품영양학과	이학사(식품영양학전공)	기업법무전공		기업법무학사(기업법무전공)
사회 과학 대학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정치외교학전공)	문화예술기획전공		문화예술학사 (문화예술기획전공)
	행정학과	행정학사(행정학전공)	비서학전공		문학사(비서학전공)
	홍보광고학과	문학사(홍보광고학전공)	빅데이터분석학전공	이학사(빅데이터분석학전공)	
	소비자경제학과	소비자경제학사(소비자경제학전공)	상담학전공	문학사(상담학전공)	
	사회심리학과	사회심리학전공	문학사(사회심리학전공)	세무회계학전공	경영학사(세무회계학전공)
		사회심리학전공	문학사(사회심리학전공)	순환융합인문학전공	융합인문학사 (순환융합인문학전공)
			스토리텔링전공	문학사(스토리텔링전공)	
			인재개발전공	인재개발학사 (인재개발전공)	
			통상학전공	국제통상학사(통상학전공)	

<별표 5> 등록금 반환 기준

1. 당해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학기 개시일부터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수업료는 아래 표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사유 발생일	공제금액	반환금액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	-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로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등록금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다.

3. 교내 장학금을 받아 이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한 경우는 교내장학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등록금 총액대비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이 경우 공제금액 부족시는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삭제 2004.9.21)
5. (삭제 2011.8.29)
6. 1호 내지 2호의 반환사유 발생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별표 6> 학교기업의 명칭 및 관련학과, 사업종목 및 소재지(신설 2014.8.20.)

명칭	관련학과(전공)	사업종목
숙명아이	공예과	제조업, 소매업(전자상거래)

학 위 증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여성사학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아래의 전공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사학위의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에 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

한국어문학-심화과정(문학사)(세부전공: 국어국문학)
역사문화학(문학사)
영어영문학(부전공)

졸 업 연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 ○ ○ (인)

졸업증서번호
학위번호

(서식 2) 수료증 서식(개정 2015.1.30./삭제 2019.07.28)

(서식 3) 시간제 등록생 학위증 서식 (개정 2014.2.14./2015.1.30)

제 호

학 위 증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전공 및 학위: 한국어문학-심화과정(문학사),
(세부전공: 국어국문학)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총 장 ○ ○ ○ 박사 ○ ○ ○ (인)

학위번호: 숙명여대-학점-0000-0000

제 호

학 위 증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전 공 피부미용학(가정학사)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총 장 ○ ○ ○ 박사 ○ ○ ○ (인)

학위번호: 숙명여대-학점-0000-0000

SOOKMYUNG WOMEN' S UNIVERSIT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as conferred upon

(성 명)

the degree of

Bachelor of (학위명) in (제1전공명) (세부전공명)

Bachelor of (학위명) in (복수전공명)

Minor in (부전공명)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obligations thereto pertaining.

Given in Seoul, Korea on the (날짜) of (월), in the year of (연도).

Presid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졸업증서번호
학위번호

숙명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 제 정: 1984년 3월 1일
- 개 정: 2022년 12월 29일
- 관리부서: 교무처 학사팀
- 관련부서: 기초교양대학 교학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본 대학교 학칙 중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사운영에 관한 업무는 따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제2장 입학, 등록 및 졸업

제3조(원서접수) ①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은 입학원서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4.)

② 편입학(학사편입학 포함)을 지원하는 사람은 편입학원서를 소정기일까지 입학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4.2.14.)

③ 재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은 매학기 개강 8주전까지 재입학원서를 학적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2014.2.14.)

제4조(편입학 및 학사편입학) ① 편입학은 2,3학년에 한한다.

② 편입학자 및 학사편입학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제4조의2(재입학) ① 제적자 또는 기간만료 수료자에 대한 재입학은 재입학 여석 내에서 학부·학과·전공의 전형을 거쳐 허가한다. 단, 성적경고에 의한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1./2009.7.6./2013.1.30)

②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재입학을 할 수 없다. (2009.7.6./개정 2016.11.18./2019.12.14.)

1. 징계에 의한 제적학생
2. 입학 후 1년 이내 자퇴한 신입생
3. 입학 후 첫학기에 자퇴한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

③ 재입학자의 경우 재입학 이전의 성적경고(학사경고 포함) 횟수, 휴학기간은 각각 학칙 제64조 제2항의 제적요건, 학칙 제38조 제2항의 휴학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신설 2016.11.18.)

제5조(학력조회) 편입학자(학사편입학 포함)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전적 대학에 학력 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4)

제6조(편입학 및 학사편입학자에 대한 학점인정) ① 편입학자의 전적교 학점인정은 편입학 한 학기별로 인문사회계열은 3학기 32학점, 4학기 47학점, 5학기 62학점 범위,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3학기 33학점, 4학기 49학점, 5학기 65학점 범위에서 각 전공 및 교양과목의 동일유사과목에 한해 인정하되, 전공별 최소졸업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공 및 교양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잔여 학점이 있을 경우, 이를 위의 기준학점 내에서 자유선택으로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11.2.28./

2012.02.29./2015.1.30./2016.5.18.)

② 학사편입학자 및 해외대학과의 학위과정 MOU에 의해 편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제1,2학년과정 인문사회계열 62학점,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 65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1.2.28./2012.2.29./2015.1.30./2016.5.18./2019.2.15.)

③ 학사편입학자 및 해외대학과의 학위과정 MOU에 의해 편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재학 중 제1전공 교과과정에

서 인문사회계열은 54학점,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57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제1전공 다전공과정의 전공졸업학점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전공졸업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을 취득해도 이를 인정한다. (개정 2003.6.18/ 2008.2.18./ 2011.2.28./2015.1.30./2016.5.18./2019.2.15.)

제7조(등록절차) ① 총장은 학생의 매학기 등록에 따른 등록금과 납부기일을 정하여 학기개시 15일 이전에 학생에게 통지한다.

② 9학기(약학대학은 13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은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금을 납부한다. (개정 2004.3.1./ 2014.2.14)

1. 1학점~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2. 4학점~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3. 7학점~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4. 10학점~12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 2
5. 13학점이상은 등록금 전액

③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4.12.27)

제8조(졸업) 일반 졸업, 조기졸업, 복수전공 졸업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각 항의 졸업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은 졸업예정학기에 정해진 졸업신청서를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 학장의 승인을 받아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계속수학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계속수학을 학기 중(휴학포함) 포기할 경우 정해진 졸업신청서를 6월 또는 12월 말까지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7.6./ 2013.12.7/2017.8.22./2017.12.9.)

① 일반졸업의 자격

1. 8학기 이상 등록하여 인문사회계열 총 125학점 이상,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 총 130(약학대학 16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칙」 제55조를 이행하여 합격한 학생 (개정 2010.12.6./ 2011.2.28./ 2012.2.29./ 2013.12.7./ 2014.2.14./2015.1.30./2016.5.18.)

2. 전학년을 통한 성적 평점평균이 1.70이상이면서 취득학점 내용이 <표1>졸업학점배정표, <표2>교양필수 및교양선택이수과정표에 정한 제1전공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 (개정 2007.6.4./ 2010.12.6)

② 조기졸업의 자격

1. 편입생을 제외한 6학기 이상(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는 7학기 이상)의 재학생으로서 인문사회계열 125학점 이상,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 13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칙」 제55조를 이행하여 합격한 학생 (개정 2005.2.1./2007.6.4./2008.2.18./2010.12.6./2011.2.28./2012.2.29./2013.12.7./2014.2.14./

2015.1.30./2016.5.18.)

2.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과 총 평점평균이 3.70이상, 또는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로 학업성적 총 성적 평점평균이 3.30이상 이면서 취득학점 내용이 <표1> 졸업학점배정표, <표2> 교양필수및교양선택이수과정표에 정한 제1전공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 (개정 2007.6.4./2016.5.18.)

3. 학기별 이수과목이 정해진 학과의 경우 조기졸업 제한 할 수 있음 (신설 2021.10.19.)

③ 복수전공졸업자격

제1전공 이외의 전공(연계전공, 학생자율설계전공 포함)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한 학생. 단, 제1전공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었다더라도 졸업할 수 없다. (단서조항신설 2007.1.31./ 개정2011.12.1./2020.11.30)

④ (삭제 2009.7.6)

제9조(우등생) (개정 2011.2.28.)

① 졸업우등생 : 본교에 6학기 이상 등록한 졸업자로서, 학교생활에 성실하고, 전체 이수 과목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표창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개정 2014.2.14.)

② 졸업성적우등생 : 졸업시 총 평점평균 3.70 이상인 학생은 졸업성적우등생으로, 4.00 이상인 학생은 졸업성적최우등생으로 학적부에 기재한다. (개정 2014.2.14.)

③ 학기우등생 : 매학기 각 학부·학과·전공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최우등생 및 우등생으로 표창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선발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5.14.)

제3장 전공 이수

제10조(제1전공, 복수전공 등 이수) (조명칭변경 2010.12.6.)

- ① 학생은 소속 학부·학과·전공에서 운영하는 제1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공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2개 학기를 이수한 후에 기초공학부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공과대학내의 학부·학과·전공 중에서 제1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7.6./2010.12.6./2011.12.1./2017.9.27.)
- ② 학생은 제1전공과정 이외에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학생자율설계전공을 지정기간에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삭제 2010.12.6./ 신설2017.9.27./개정 2020.11.30)
- ③ (개정 2009.7.6/ 삭제 2010.12.6.)
- ④ 복수전공을 선택한 재적생 수가 1전공 3학년 및 4학년 편제 정원의 100%를 초과하는 전공에 대해서는 복수전공 이수 자격을 소정의 기준 이상의 성적 취득자로 제한 할 수 있으며, 예체능계열 학부·학과·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실기고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2.29./ 개정 2017.6.4./2019.5.23.)
- ⑤ 학사편입생 및 본교 복수학위과정생은 학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11.30.)

제11조(세부전공 운영) (개정 2010.12.6.)

- ① 학부에 둔 세부전공은 세부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재학 중 정해진 기간에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4.2.14./ 2017.6.4.)
- ② 입학 시 세부전공별 모집단위로 구분하여 선발한 학부·학과·전공 소속 학생은 해당 세부전공에 자동 소속되며 재학 중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12.14.)
- ③ 재학 중 모집단위별 세부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1전공 학생 및 해당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한 학생은 이수하고자 하는 세부전공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4.)
- ④ 세부전공은 졸업 시 학적부와 학위증서에 기재한다. (호번호변경/개정 2019.12.14.)
- ⑤ 세부전공을 운영하는 학부·학과·전공과 그 세부전공은 <표 13>과 같으며, 세부전공 이수 요건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호번호변경/개정 2019.12.14.)

제11조의2(전공트랙 운영) (조신설 2021.02.03.) ① 전공트랙을 개설하고자 하는 학부·학과·전공은 교육과정 개편 시에 ‘전공트랙 교육과정 개발보고서’를 제출하고 학사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전공트랙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재학 중 정해진 기간에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학부·학과·전공에서 정한 전공트랙 이수요건을 충족한 학생에 대해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③ 학부·학과·전공의 전공트랙 운영 및 트랙별 이수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교육과정

제12조(졸업학점 배정)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배정은 <표1>과 같다.

- ② 졸업에 필요한 학점 기준은 입학년도의 학점기준에 따른다. 단,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0.12.6.)

제13조 (교과목의 이수) ① 교육과정은 전공주임의 지도에 따라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이수할 수 있다. 다만, 교양필수과목 및 교직과목은 학년별로 이수한다. (개정 2005.2.1./ 개정 2013.8.17)

- ② 학생은 학기당 최저 9학점에서 최대 19학점까지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졸업학점 배정표의 교양필수, 교양핵심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등 교과구분별로 정한 기준 학점은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학기당 이수학점의 세부 기준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6.1.1./ 2010.12.6./2021.11.25)
- ③ (신설 2005.2.1/ 개정 2007.6.1./ 삭제 2010.12.6)
- ④ 학칙 제48조 제4항에 따른 특별과정의 교과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호번호변경 2005.2.1./ 개정 2013.8.17)
- ⑤ 국내외의 기관·기업체에서 시행하는 현장 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8.17./개정 2015.1.30./2016.1.27./개정 2019.04.24)

⑥ 학생 창업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창업대체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30./개정 2019.04.24)

⑦ 현장실습 및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받는 전공 이수학점은 재학 중 18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약학부 실무실습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9.04.24)

⑧ 온라인 공개강좌(MOOC)는 학과장·학부장·전공주임의 사전 지도에 따라 재학 중 3학점 이내로 이수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교양일반 학점으로 인정된다. 온라인 공개강좌의 학점인정 기준과 방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9.18./항번호 변경 2019.04.24.)

⑨ 학생 사회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9.02.)

⑩ 학칙 제 43조 제 2항에 의한 연계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3학년 수료자로 총평점평균이 2.7이상이고 석사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학부-대학원 간 연계교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졸업 초과학점에 대해서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1.30.)

제14조(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의 학수번호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교양과목의 학점취득) ① 교양과목은 교양필수, 교양핵심선택, 일반교양선택으로 구분하며, <표2>와 같이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3.9.27/2005.2.1/2008.8.11./2010.12.6./2011.8.4./2012.12.14/2017.6.4./2018.2.6./2018.10.28./2019.2.15.)

1. 소정의 공인영어시험성적을 취득한 학생 또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국적 학생은 영어교양필수 과목의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호 신설 2019.2.15.)

2.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생 및 편입생은 교양필수 과목 중 '진로탐색과역량개발'의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호 신설 2019.2.15./개정 2020.02.01)

3.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시각·청각·언어 장애학생은 교양필수 및 교양핵심선택 과목을 타 교양과목으로 대체 이수할 수 있다. (호 신설 2019.2.15./개정 2020.02.01.)

4.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유학생의 교양 이수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호 신설 2020.02.01.)

5. 인공지능공학부, 소프트웨어학부(컴퓨터과학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를 제 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교양필수 과목 중 '논리적사고와소프트웨어'의 이수를 면제한다. 또한, 기타 소속 학과 학생 중 S/W관련 전공과목 수강자에 대해 해당 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 대상 과목은 기초교양대학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설 2020.11.30./개정 2022.12.29.)

② 교양체육의 학점은 최대6학점으로 한다. 다만 교양핵심 이수학점의 인정을 2학점으로 제한하고 교양핵심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잔여 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3.11.10. / 2005.2.1. / 2006.1.1. / 2010.12.6. / 2015.1.30. / 2020.02.01. / 2020.11.30. / 2021.11.25./2022.12.29.)

③ 무용과에서 주관하는 교양 교과목은 교양핵심 이수학점의 인정을 2학점으로 제한하고 교양핵심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잔여 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이를 산입한다. (신설 2020.02.01./개정 2020.11.30)

④ 모든 교직과정 이수학점은 일반교양선택영역의 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06.1.1./2016.11.18./항번호변경 2020.02.01)

⑤ (신설 2010.12.6./개정 2011.12.22./2015.1.30./2015.11.20./삭제 2016.5.18./항번호변경 2020.02.01)

제16조(교과목의 설정과 개설) ① 교양교과목 및 연계전공 주관 전공 교과목의 설정과 개설은 기초교양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초교양대학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0.3.8./ 2013.12.7./ 2014.8.20./ 2016.8.20./2017.1.26.)

② 전공과목의 설정과 개설은 해당 학부·학과·전공 교수회의 회의와 학사·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수처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6.1.1./ 2009.7.6./ 2010.12.6)

③ 연계전공에 두는 전공과목의 설정과 개설은 연계전공 주임이 설정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주관 학부·학과·전공의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1.12.1./2017.1.26.)

제17조(교육과정의 적용) 학생은 재학당시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8조(교육과정 적용의 특례) ① 교육과정 개정 이전에 입학 및 편입학한 학생이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교

양 및 전공필수 학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한 영역 내에서 타과목으로 보충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부·학과·전공에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둘 경우 해당 경과조치에 따른다. (개정 2020.06.20)

② 교육과정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개정된 교육과정의 새로운 교과목을 이수할 때는 이를 개정교육과정의 해당영역(교양, 전공, 교직 등)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6.1.1)

제5장 수업

제19조(강의시간표) 교무처장은 다음 학기 각 전공 개설교과목의 강의시간표를 종합하여 개강 1개월전에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수업시간) 수업시간의 단위는 75분 또는 50분으로 하며 시작 및 종료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30.)

시간	75분수업	50분수업
08:00~08:30		08:00~08:50
08:30~09:00		
09:00~09:30	09:00~10:15	09:00~09:50
09:30~10:00		
10:00~10:30		
10:30~11:00	10:30~11:45	10:00~10:50
11:00~11:30		
11:30~12:00		
12:00~12:30	12:00~13:15	12:00~12:50
12:30~13:00		
13:00~13:30	13:30~14:45	13:00~13:50
13:30~14:00		
14:00~14:30		
14:30~15:00		
15:00~15:30	15:00~16:15	15:00~15:50
15:30~16:00		
16:00~16:30	16:30~17:45	16:00~16:50
16:30~17:00		
17:00~17:30		
17:30~18:00	18:00~19:15	17:00~17:50
18:00~18:30		
18:30~19:00		
19:00~19:30		18:00~18:50
19:30~20:00		
		19:00~19:50

제21조(폐강 및 분반) (개정 2016.3.15.) ① 매학기 개설과목 중 수강신청인원이 각 호의 폐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폐강한다. 다만, 교과운영상 필요할 경우 각 호의 단서에 따라 일부 폐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18./2015.1.30./2016.3.15./2021.05.14)

1. 전공과목의 폐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수 인원으로 개설이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폐강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계전공주관교과목의 경우 기초교양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폐강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2.29./2015.1.30./ 2016.3.15./ 2016.8.20./2018.8.4./2021.05.14./2022.02.12)

구분	연계전공	입학정원 기준			사이버강좌
		30명 이하	80명 이하	81명 이상	
폐강기준	10명 미만	8명 미만	10명 미만	15명 미만	30명 미만

2. 교양 과목의 폐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수 인원으로 개설이 필요할 경우 기초교양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폐강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6.3.15./ 2016.8.20./ 2018.8.4./ 2020.02.01./ 2020.11.30./ 2021.05.14./2022.02.12./2022.12.29.)

교과 구분	교과목명	폐강기준
교양필수	공학영어, 비즈니스영어, 글로벌미디어영어, 관광·문화영어, 커뮤니케이션영어	15명 미만

교과구분	교과목명	폐강기준
	융합적사고와글쓰기, 비판적사고와토론, 세계시민교육과리더십, 진로탐색과역량개발, 논리적사고와소프트웨어, 디지털시대의사고와의사소통	20명 미만
교선택심	3레벨(프로젝트형)	20명 미만
	2레벨(참여형)	30명 미만
	1레벨(강의형)	40명 미만
그 외	경력개발처 주관 멘토프로그램	8명 미만
	교양체육, 교양외국어(이론), 집단상담과의사소통	25명 미만
	사이버강좌	50명 미만

3. 교직과목의 폐강 기준은 10명 미만으로 한다. 다만, 소수 인원으로 개설이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폐강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05.14.)

4. (개정 2012.2.29./ 삭제 2018.8.4.)

② 교과목 개설 시점에 허용할 수 있는 분반의 개수는 최근 3년 이내의 해당 과목 평균 수강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각 강좌별 수강인원제한은 다음 최소수강인원보다 적게 제한할 수 없다. 다만, 교과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부 분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15./개정 2020.02.01./2020.06.20)

1. 전공 및 교직 과목의 분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과구분	이론강의	이론및실험·실습·실기 병행강의	실험·실습·실기강의
최소수강인원	50명	40명	20명

2. 교양 과목의 분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3레벨 교과목은 추가 분반을 허용하지 않는다.

레벨	교과수준	최소수강인원
3	3레벨	
2	2레벨	40명
1	1레벨	60명

제22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강의시간표에 따라 수강할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신청 전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최종변경기간까지 수강신청 최저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학사경고 조치를 하고 학적부에 등재한다. (개정 2011.12.1./ 개정 2014.2.14./2019.12.14)

② 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9학점이상 19학점(교육학부 및 약대 26학점) 이내로 하며 연간 수강신청학점은 36학점(교육학부 및 약대 50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7학기 이상(약대는 11학기 이상) 등록 학생의 최저 수강신청학점은 2학점으로 하며 전학기에 성적경고(학사경고 포함)를 받은 학생의 수강신청 학점은 15학점(교육학부 및 약대 20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31./ 2011.2.28./ 2011.12.1./2014.2.14./2015.9.18./2019.12.14)

③ 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70이상인 학생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기당 3학점을 초과하여 22학점(교육학부 및 약대 29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015.9.18.)

④ 사회봉사, 교육봉사, 취업설계, 멘토프로그램 및 기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이 승인한 과목에 대해서는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제한학점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5.2.1./2009.7.6./ 2011.12.1.)

⑤ 수업시간이 동일교시에 중복된 교과목은 이중으로 수강신청 할 수 없다.

⑥ 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 중 C+이하 성적을 취득한 과목은 희망에 따라 학기당 2과목 이내(F등급 제외)에서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음악대학의 실기 과목은 F등급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1.2.28./2018.2.6.)

⑦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⑧ (삭제 2009.7.6.)

⑨ 교원의 자녀는 부모 교원이 담당하는 강좌를 수강신청할 수 없다. 다만, 이수 전공의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수강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교무처 학사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4.24.)

제22조의2(학점이월) (조신설 2019.12.14.) ① 1학기 수강신청학점이 15학점(교육학부 및 약학부는 20학점) 이상인 경우 연간수강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잔여학점을 3학점까지 2학기이월할 수 있다.

② 학칙시행세칙 제 22조 제3항에 따른 초과 신청 가능 학점은 이월 학점보다 우선 적용하며, 이월 학점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③ 학점 이월의 제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기 수강포기학점
2. 성적우수학생에게 부여한 추가학점
3. 학칙시행세칙 제 2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목

제23조(수강신청 지도) 지도교수는 학생이 졸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수강지도를 하여야 하며, 성적경고자와 조기졸업 예정자는 구분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수강신청 변경 및 포기) ① 수강신청변경은 개강 후 지정한 기간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4주차에 학사관리시스템으로 포기과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포기한 경우 그 성적은 낙제(F)로 처리된다. (개정 2011.12.1./2019.12.14)

제25조(학사력) 교무처장은 다음 학년도의 학사계획을 학사력으로 작성하여 시행 1개월 전까지 발표한다. (개정 2013.8.17)

제26조(강의계획서 및 출석부)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주별강의 계획, 참고문헌 등이 기재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전산입력을 마쳐야 하며, 학생들은 이를 조회, 출력하여 수강신청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 강의계획서를 전산 입력하여야 출석부를 출력할 수 있다.(개정 2011.12.1.)

제27조(휴·보강계획) 학사력에 없는 휴강, 결강이 있을 경우 학부장·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학기내에 보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6)

제28조(출석 점검 및 인정) ① 교수는 강의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7.)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2.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교육실습(학칙시행세칙 제36조와 제37조)으로 인한 경우(신설 2016.10.1.)
4.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을 학사팀이 인정한 경우(신설 2016.10.1./개정 2017.8.22.)
5. 공식행사 참석 또는 총장이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호번호 변경 2016.10.1./개정 2020.11.30)

③ 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한 경우에는 생리공결을 신청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9.06.20.)

제29조(교외수업) 교외수업은 강의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며, 강의계획서에 없는 교외수업은 실시 2주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전공심화 과정) (삭제 2010.12.6./ 신설 2015.1.30)

①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학칙시행세칙 <표1>졸업학점배정표에 명시된 각 전공별 심화과정 이수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②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

제31조(복수전공 및 부전공) ① 학생은 LCB외식경영전공 및 약학전공, 관현악전공을 제외한 모든 전공과 연계전공과정, 학생자율설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여 해당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복수·부·연계·학생자율설계전공은 각 한 개만 선택가능하며, 교육학전공 및 체육교육전공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5.2.1/ 2007.1.31./ 2011.12.1./ 2013.1.30./ 2014.2.14./2015.1.30./2019.12.14./2022.0

6.06.)

② 학생은 LCB외식경영전공, 약학전공, 관현악전공, 연계전공, 학생자율설계전공을 제외한 모든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부전공자는 해당전공의 전공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예체능계는 특정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1 / 2007.1.31/ 2007.6.4/ 2008.2.18./ 2012.2.29./2019.12.14./2021.02.03./2022.06.06.)

③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실험실습을 요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소정의 실험실습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④ 편입학생의 전적교 인정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점에 산입할 수 있다.

⑤ 삭제 (2007.1.31.)

⑥ 학생자율설계전공의 승인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자율설계전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자율설계전공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2.14.)

제32조(연계전공) ① 학생은 재학 중 각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교과목을 매학기 수강 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② 각 연계전공은 관련 학부·학과 및 전공을 연계하여 운영하며, 과정별 이수과목 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이를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산입한다. (개정 2009.7.6)

③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중 연계전공 해당 과목이 있을 경우, 연계전공과 제1전공·복수전공·부전공·교양과목 사이에 최대 9학점까지 중복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3.9.27/ 2005.2.1./ 2015.1.30)

제32조의2(학·석사 연계과정) ① 학·석사 연계과정생은 제2항의 자격을 갖춘 학생의 신청을 받아 석사과정 전공 주임교수가 심사 및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5.2.1/ 2017.12.9.)

② 학·석사 연계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05.2.1/ 2008.2.18./ 2011.2.28./ 2014.2.14./ 2015.1.30./2016.5.18./2017.12.9.)

1. 조기졸업트랙 신청자격은 5학기까지 인문사회계열 93학점 이상,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 98학점 이상 또는 6학기까지 인문사회계열 112학점 이상,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 117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3.30이상(신설 2017.12.9.)

2. 정규졸업트랙 신청자격은 6학기까지 인문사회계열 93학점 이상,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 98학점 이상 또는 7학기까지 인문사회계열 112학점 이상,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 117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3.30이상(신설 2017.12.9.)

3. 약학부 정규졸업트랙 신청자격은 10학기까지 1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3.30이상(신설 2020.11.30.)

③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학부 재학 중에 석사전공주임의 지도를 받아 석사학위과정 교과목(학기당 6학점이내) 중 6내지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4/2017.12.9.)

④ (삭제 2008.2.18,“학칙 제63조 제5항”에 내용 반영)

⑤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는 학사과정 졸업 시 전학년을 통한 성적 평점평균이 3.30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7.12.9.)

⑥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가 대학원 제1학기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졸업을 유보하고 학칙시행세칙 제8조의 졸업자격을 갖추어 졸업한다. (개정 2008.2.18./ 2014.2.14/항 번호 변경 및 개정 2017.12.9.)

⑦ 학·석사 연계과정 조기졸업트랙에 선발된 학생이 7학기까지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규졸업트랙으로 전환한다. (항 번호 변경 및 개정 2017.12.9.)

⑧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이 중도 포기하고자 하거나 8학기까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계과정 포기원을 받아 연계과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2.9.)

제6장 정규학기와 학점취득

제33조(교양교과목 학점취득 특별시험) (삭제 2010.12.6.)

제33조의2(입학 전 특별과정 이수학점 인정) ① 입학 전에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어학연수 포함)을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은 12학점(어학연수 2학점 포함) 범위 내에서 교양과목 또는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고, 교직과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05.2.1/ 2008.2.18)

② 입학 전 특별과정 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학기 및 누계성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항신설 2008.2.18)

제34조(계속 수학) ① 제1전공 졸업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 중 복수전공·연계전공·학생자율설계전공·부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계속수학신청서를 학사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계속 수학할 수 있다. (개정 2005.2.1/ 2008.2.18./ 2014.2.14./ 2015.11.20./2017.8.22./2017.9.27./2020.11.30)

② 약대 학사편입학생의 경우, 약사고시 관련교과목 이수에 필요한 계속수학을 승인할 수 있다.

제35조(계절학기의 개설) ① 학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계절학기를 개설코자 할 때에는 개설할 교과목명, 학점, 개설 일자, 등록요령 등을 사전에 공고한다. (개정 2013.12.7)

② 계절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③ 계절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8학기 이내 재적학생으로서 교무처장이 수강료 무료 과목으로 정한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4.6.14/ 2008.11.24/ 2010.2.22./ 2013.8.17./ 2015.9.18.)

④ 계절학기에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일반학기의 평점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누계평점 산정에는 포함된다.

⑤ 휴학생도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다만, 휴학생이 계절학기 수강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휴학 중에는 졸업할 수 없으며, 복학 후 정규학기에 등록하여 최소 2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졸업 할 수 있다. (신설 2015.9.18.)

제7장 교직과정

제36조(사범계학과의 교직과정 이수) ① 교원자격검정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하고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관련 자격증을 수여한다. 교원양성과정(교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2005.2.1./ 2013.8.17./2019.06.20)

1. (호삭제 2019.06.20)

2. (호삭제 2019.06.20)

3. (호삭제 2019.06.20)

4. (호삭제 2019.06.20)

② (항삭제 2019.06.20)

③ (항삭제 2019.06.20)

④ (항삭제 2019.06.20)

⑤ (항삭제 2008.2.18)

제37조(비사범계학과의 교직이수) (조삭제 2019.06.20.)

제38조(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전공의 입학정원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조제목변경 2007.7.30. /조삭제 2019.06.20.)

제39조(자격증 수여) (조삭제 2019.06.20.)

제8장 평생교육사 자격과정

제40조(평생교육사 과정) ① 평생교육사 과정은 별도의 절차 없이 졸업시에 평생교육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②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학생은 <표8> 평생교육사과정 이수과목표에서 정한 과목을 일정한 학점 이상(2급은 30학점 이상, 3급은 21학점 이상)으로 이수하고,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24)

③ 평생교육 현장실습은 제6학기 이후 현장실습 인정 기관에서 4주간의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 ④ 평생교육사 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며,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⑤ 학사학위 취득 후 평생교육사 교과목을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하여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03.6.10/ 개정 2008.11.24)

제9장 시험과 성적

제41조(시험의 주관)(조삭제 2020.06.20)

제42조(성적평가) ① 성적은 시험성적, 출석, 과제물, 기타학습을 종합하여, 다음의 <성적평가기준표> 및 <상대평가 일반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적등급분포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상대평가 일반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4.6.14/ 2006.1.1./ 2011.2.28./ 2011.12.1./ 2015.1.30./ 2015.9.18./2019.1.5./2020.11.30)

<성적평가기준표>

성적	평점	점수	성적	평점	점수
A ⁺	4.3	97~100	C ⁺	2.3	77~79
A ⁰	4.0	94~96	C ⁰	2.0	74~76
A ⁻	3.7	90~93	C ⁻	1.7	70~73
B ⁺	3.3	87~89	D ⁺	1.3	67~69
B ⁰	3.0	84~86	D ⁰	1.0	64~66
B ⁻	2.7	80~83	D ⁻	0.7	60~63
			F	0.0	59이하

<상대평가 일반기준> (개정 2004.6.14./ 2011.12.1.)

등급	분포	
	21명 이상 수강하는 교양 이론과목 및 전공 이론과목	실험·실습·실기 교양과목 또는 20명 이하 수강하는 교양 이론과목
A ⁺ ,A ⁰ ,A ⁻	30% 이내	40% 이내
A ⁺ ,A ⁰ ,A ⁻ 와 B ⁺ ,B ⁰ ,B ⁻ 의 합	70% 이내	90% 이내
C ⁺ ,C ⁰ ,C ⁻ 와 D ⁺ ,D ⁰ ,D ⁻ 의 합	50% 이내	50% 이내
F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② 체육특기자, 장애학생 및 타교교환학생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삭제 2010.12.6./ 개정 2011.12.1)
- ③ 성적평가가 P/F인 과목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학기 및 누계평점평균성적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④ 기업연수, 교환연수, 복수학위과정, 방학 중 국제교류프로그램 성적평가는 P/F(합격/불합격)로 표시한다. (개정 2003.6.10./2016.1.27./2017.6.4.)
- ⑤ 위탁연수에 의한 타대학교 등에서 취득한 성적은 1 또는 2학기 단위로 인정하고, 본교 기준으로 성적을 환산하여 기재하며, 학기 및 누계성적에 산입한다. (개정 2005.2.1./2016.1.27./2017.6.4.)
- ⑥ 학점교류에 의한 타대학교 등에서 취득한 성적 인정 평가는 과목별 취득 학점을 본교 기준으로 환산하여 학기 및 누계성적에 산입한다.(개정 2016.11.18.)
- ⑦ 매학기 총 수업시간의 1/4 이상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개정 2017.9.27.)
- ⑧ 재수강 교과목의 최초 성적은 무효로 처리되며, 재수강 교과목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다. 재수강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재수강으로 표시하며 학적부에는 과거 이수했던 과목의 성적이 남는다. (개정 2018.2.6.)
- ⑨ 재수강을 원하는 학생이 교육과정 개정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해당 과목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단, 성적 포기는 취득성적이 C+이하인 과목에 한한다. (개정 2011.2.28./2017.1.26.)
- ⑩ (개정 2011.12.1./ 2013.8.17./ 삭제 2014.8.20)
- ⑪ 성적평가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린다.

제43조(평점평균의 산출) 평점평균은 해당학기 각 수강과목의 평점에 학점을 곱한 합계점수를 총학점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개정 2011.12.1.)

< 평점평균산출 표(예) > (개정 2011.12.1.)

과 목	성 적	학 점	평 점	평점계	평점평균
국 어	A ⁰	2	4	8	52.1 ÷ 18 = 2.89
·	C ⁺	3	2.3	6.9	
·	B ⁻	3	2.7	8.1	
·	B ⁰	3	3	9	
·	C ⁰	3	2	6	
·	A ⁻	3	3.7	11.1	
·	B ⁰	1	3	3	
계		18		52.1	

제44조(추가시험) ① 추가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추가 시험 응시원서를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8./2017.8.22./2022.06.06.)

1. 질병,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진단서
2. 친족사망 등 상고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 또는 감염 우려 등의 사유로 등교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 또는 격리조치 기간에 관한 증빙서 (신설 2022.06.06.)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 (호 번호 변경 2022.06.06.)

② 추가시험을 신청한 학생의 성적은 추가시험의 평가결과 외 과제물 대체 또는 다른 시험 점수등을 참작하여 인정점수를 줄 수 있으며, 이 과목의 최종성적은 학칙 제60조에 따른다. 다만, 교직이수예정자의 학교현장실습으로 인한 추가시험 신청의 경우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제1급 감염병 확진으로 인한 추가 시험 신청의 경우는 최종 성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7.6.14./2022.06.06.)

제45조(성적표 입력 및 제출) ① 담당교수는 학기 중 시험성적, 출석, 과제물 등의 세부성적과 최종성적을 입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2017.9.27.)

- ② 담당교수는 학기말 시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교과목의 세부성적을 포함한 성적입력 및 전자출석부확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2011.12.1./2017.9.27.)
- ③ 성적은 담당교수의 성적 입력 종료직후 7일간의 성적 정정기간에 학생에게 전산으로 공개된다. (개정 2017.9.27.)
- ④ 담당교수는 성적 정정기간에 학생으로부터 정정신청을 받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직접 정정할 수 있다. 단, 상대평가 해당과목일 경우 성적 정정 시에도 상대평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2015.1.30/2017.9.27.)
- ⑤ 담당교수는 성적 정정기간을 거쳐 성적을 확정 후 성적평가표와 함께 성적산출근거자료(문제지, 답안지, 각종 과제물 등)를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5년간 보관한다. (개정 2005.2.1./2017.9.27./2018.8.4.)
- ⑥ 성적이 입력되지 않은 학생의 성적은 성적확정 시 F로 처리된다.(개정 2005.2.1./삭제 2016.5.18./개정 2017.9.27.)

제46조(성적 확인 및 정정절차) ① 학생은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에 반드시 성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교수에게 성적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5.18.)

- ② 학생이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에 정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성적확정 이후에는 성적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전산착오입력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답안지 등의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학부장·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정정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학사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신설 2016.5.18./ 개정 2016.8.20.)

제47조(시험 부정행위의 처벌) ① 성적평가관련 부정행위 등 학생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2.6.)

1. 해당 학기 전과목 F 처리: 대리시험자, 대리의뢰자 및 시험답안지를 바꾸거나 사전에 계획 하에 집단으로

백지답안 또는 시험거부를 한 학생 (개정 2018.2.6.)

2. 해당학기 해당과목의 F처리: 시험, 출석, 과제 등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학생 또는 시험감독교수의 지시에 불응한 학생 (개정 2018.2.6.)

② 본 규정에 의한 조치는 학생의 소명절차 후 교과목 담당교수의 경위서와 증거물에 의하여 처리한다. 추가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칙 80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8.2.6.)

제48조(성적경고) ① 교무처장은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의 명단과 성적취득 상황을 소속 학장 및 학부장·학과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09.7.6)

② 지도교수는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을 상담하고 등록, 수강신청 및 학습에 관련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심리상담, 학습컨설팅, 학사상담 등 추가 지도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③ 성적경고는 학적부에 등재한다.

제49조(졸업논문 및 졸업자격인증제) ① 졸업논문(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어학능력시험 등)은 <표 9>와 같이 시행하며, 시행방법을 변경할 경우 학부·학과·전공 교수회에서 결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2.28.)

② 졸업논문의 신청자격은 학칙 제54조에서 정한 3학년(약학대학은 5학년) 수료학점을 취득한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전공 이수학점이 졸업전공학점에 미달한 경우에는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은 신청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07.6.4./2009.7.6./2013.12.7./ 2014.2.14)

③ 졸업논문 시행 및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자는 학기 초 졸업논문제 신청기간에 해당전공별 졸업논문제를 학사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해야 한다.(개정 2005.2.1./2009.7.6./2011.12.1)

2.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은 소속 교수 합의에 따라 매학기 졸업논문제 신청기간 종료 후 전임교수 중에서 전담교수를 배정한다. (개정 2005.2.1./2009.7.6)

3. 전담교수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전공 이수 최종학기 내에 논문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전담하여 지도한다.

4. 졸업논문은 개인연구를 원칙으로 하되, 전담교수의 지도에 따라 공동연구도 허용할 수 있다.

5.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은 졸업논문의 심사위원을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심사를 마친 후, 매학기 정해진 기간까지 심사위원 명단과 함께 심사결과를 교무처에 보고한다. (개정 2009.7.6./2016.11.18.)

6. 학부·학과·전공은 제1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의 졸업논문 심사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30.)

④ (개정 2006.1.1./2009.7.6./2010.3.8./ 2013.8.17./2016.11.18./삭제 2018.2.6.)

⑤ (개정 2005.2.1/ 2006.1.1/ 2009.7.6./ 2014.2.14./2016.11.18./2019.11.14./삭제 2019.12.14)

⑥ 한국어능력인증은 <표 12> 공인 한국어인증시험으로 하며, 매학기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한 학생에게 부여한다. (신설 2014.2.14./개정 2016.11.18./2019.11.14)

⑦ 졸업논문, 한국어능력인증은 P/F(합격·불합격)로 하며 학적부에 기재한다. (개정 및 항번호변경 2014.2.14/ 개정 2018.2.6./2019.12.14)

⑧ 학사편입생, 재외국민 및 외국인학생(입학당시 기준임),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시각·청각·언어장애학생,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생, 시간제등록생은 학칙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3.9.27. / 2005.2.1. / 2013.12.7./항번호변경 2014.2.14./ 개정 2016.3.15.)

⑨ 학칙 제55조 제2항에서 수료처리한 학생이 수료 후 3년 이내에 졸업논문 및 졸업자격인증제에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말에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수료 후 3년이 경과한 학생은 기간만료수료 처리한다.(개정 및 항번호변경 2014.2.14/2014.9.6)

⑩ (개정 2006.1.1/ 2008.2.18/ 2009.7.6/ 삭제 2010.3.8./ 신설 2013.8.17./항번호변경 2014.2.14./ 개정 2015.9.18./개정 2016.5.18./2018.2.6./삭제 2019.12.14.)

⑪ 졸업자격인증제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시험이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으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체시험 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1.30.)

제49조의2(우수능력 인증제) (삭제 2017.6.4.)

제10장 학적변동

제50조(전과) ① 학칙 제35조에 의한 변경(이하 '전과'라 한다)은 재적 중 1회에 한해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7.6./ 2013.12.7)

1. 전형은 매년 11월 중순경에 실시하며, 지원서는 소속 학부장·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거쳐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2.12./ 2009.7.6./ 2015.9.18./2017.8.22.)

2. 전과 지원자격은 2학년, 3학년, 4학년 진급예정자로 한정하며, 해당 학부·학과·전공 입학정원의 20%이내(사범계학과는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한다. (개정 2007.6.4/ 2009.7.6/ 2009.12.7/ 2011.2.28./ 2013.1.30/2018.10.28.)

② 전과 전형은 각 학부·학과·전공 교수회의가 결정한 전형방법에 따라 지정한 기일에 학부·학과·전공에서 실시하며, 각 학부·학과·전공은 전형 실시 전학기에 반드시 세부적인 전형방법을 확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009.7.6.)

③ 약학부-LCB의식경영전공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6.11.18.)

④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 입학자는 타학과로 전과할 수 없다. (신설 2016.11.18.)

제51조(휴학 및 휴학연장) ① 학칙 제38조 제1항에 의해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기개시 전월 14일부터 학기말 고사 시작전일까지 휴학하여야 한다. 단,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시작 전일로 한다. (개정 2007.2.8./ 2013.12.7)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강이후 휴학하는 학생은 학칙 제82조 제2항에 따라 납입금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7)

③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휴학할 수 없으며,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이 휴학원과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07.2.8/ 2007.6.18./ 2013.12.7./ 2016.3.15./2017.8.22./2019.12.14)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수확불능인 학생 (신설 2016.3.15.)

2. 본교에서 정한 어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 (신설 2016.3.15./개정 2019.04.24.)

3.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신설 2019.11.14.)

4. 군입대로 인한 휴학 (신설 2019.11.14.)

5.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생의 직장 사유로 인한 경우 (신설 2019.12.14.)

④ 재학생이 휴학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개정 2007.2.8)

1. 휴학 시작일 부터 학칙 제85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금 전액 반환기간까지는 학사관리시스템으로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2.8./ 개정 2011.12.1./ 2013.12.7)

2. 학칙 제85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금 전액 반환기간 다음 날부터 휴학종료일까지는 휴학원을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2.8./ 개정 2013.12.7./2017.8.22.)

3.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려는 학생은 창업휴학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하고, 창업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신설 2016.3.15./개정 2017.8.22./2018.10.28.)

4.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려는 학생은 휴학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6.8.20./2017.8.22.)

5. 군입대를 사유로 휴학하려는 학생은 휴학신청서와 군입영통지서(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4.)

6. (신설 2018.2.6./호번호변경 2019.11.14./삭제 2019.12.14.)

7. 신입생이 건강상의 사유로 입학 후 1년 이내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4.)

⑤ 휴학연장을 하고자하는 학생은 제4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강 이후 휴학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7.2.8 - 제5항 삭제 제6항을 항번호변경)

제52조(복학) 복학하려는 학생은 학사관리시스템으로 복학신청을 한 후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제53조(학적부 기재사항의 정정) 학생은 학적부 주요 기재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적부기재사항 정정원을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017.8.22.)

제11장 시간제 등록생 (개정 2009.7.6.)

제54조 (전형 및 지원절차) (개정 2009.7.6)

- ① 시간제 등록생은 각 대학 학부·학과별로 선발한다. (개정 2009.7.6)
- ② 시간제 등록생 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2. 출신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 3. 출신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제55조(합격취소) (개정 2009.7.6)

시간제 등록생 합격자라도 다음 사항 해당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개정 2009.7.6)

- 1. 소정 기간에 수강신청 및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은 학생
- 2. 지원서류 기재사항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학생
- 3. 대학에 재적중인 자
- 4. 기타 수학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학생

제56조(연속수강) 시간제 등록생이 동일전공으로 다음 학기 연속수강을 원할 경우, 학기말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연속수강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전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7.6)

제57조(시간제 등록생의 교과이수) (개정 2009.7.6)

시간제 등록생의 이수 과목은 별도 개설하지 않으며, 매학기 개설되는 교양과목 및 소속 학부·학과·전공 전공과목을 한학기에 최대 12학점까지 수강여석 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교과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부 과목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7.6/ 2014.9.6)

제58조(시간제 등록생의 성적평가) (개정 2009.7.6)

시간제 등록생의 성적평가는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F학점을 받은 과목 및 학점은 성적증명서에서 삭제한다. (개정 2009.7.6)

제59조(시간제 등록생의 학적관리) (개정 2009.7.6)

시간제 등록생에게는 학적을 별도 관리하며, 학년은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09.7.6)

제60조(시간제 학생증 및 증명서 발급) 시간제 등록생에게는 해당학기 학생증과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6)

제60조의2(시간제 등록생 학위수여) (신설 2014.9.6)

시간제 등록생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증서에 의하여 「학칙」 별표4의 학사 학위를 해당 학기말에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 1.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교양교육과정 해당 학점 이수
- 2. 전공교육과정 60학점 이상 이수하고,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해당전공의 제1전공과정 졸업학점 이수(제1전공과정 졸업학점의 1/2 이상은 본교에서 이수)
- 3. 총 140학점 이상 이수(이 중 본교에서 84학점 이상 이수)
- 4. 전체 성적 평점 1.5 이상
- 5. 시행세칙으로 정한 해당전공의 졸업논문제 통과

제61조(삭제 2009.7.6)

제62조(학칙 준용) 시간제 등록생에게는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7.6)

제12장 타 대학교 등에서의 취득학점인정

제63조(교환연수, 학점교류, 특별수강, 위탁연수, 복수학위과정의 정의) ① 교환연수는 본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국내·외 대학교 간에 공식으로 학생을 상호 파견하여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31)

② 학점교류는 교류협정을 맺은 본교와 국·내외 타대학교 간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31)

③ 특별수강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타대학교의 학생이 본교의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31)

④ 위탁연수란 특정목적에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간 등과의 협약에 의하여 특정분야에 해당하는 교과목이나 실습 등의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⑤ 복수학위과정은 본교와 외국의 대학교간의 협약체결에 따라 각각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인원은 연간 25명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5.1.30./ 2016.1.27.)

제64조(교환연수기간)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5조(교환연수범위) 본교가 파견하는 교환연수의 범위는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은 국내·외 대학교의 정규 학부 과정이나 교류 협정을 맺은 대학의 부설 어학원에 한한다.

제66조(교환연수등록 및 비용) ① 교환학생은 수학기간 중 매학기 등록금을 본교에 납입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학술교류협정서에 따라 파견대학에 등록금을 납입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해당학기를 수업년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본교와 체결된 협정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체의 비용 등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제67조(교환연수 수강과목) 교류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은 교양핵심선택, 일반교양선택,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으로만 인정하고, 교양필수 및 교직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06.1.1/ 2007.6.4./ 2010.12.6)

제68조(교환학생의 의무) ① 교환학생은 지정된 대학에서 제74조 제3항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1)

② 교환학생은 교환(자매)대학에서 수학하기 전에 교과목 이수에 대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6)

③ 교환학생은 교환학생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후 소정 양식의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제69조(교환학생의 신청자격) (삭제 2016.11.18.)

제70조(교환연수의 신청) (삭제 2016.11.18.)

제71조(교환연수학생 선발 및 파견) 교환연수학생의 선발 및 파견 관련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1.18.)

제72조(교환학생의 표시) 교환학생으로 등록을 필한 학생은 학적부에 '교환학생'으로 표시한다.

제73조(교환연수학생 활동 및 지도) 교환학생의 활동 및 지도는 교환연수대학과 협의하여 본교의 학칙 또는 교환연수대학의 학칙을 따른다.

제74조(교환연수, 복수학위과정, 위탁연수 학점의 인정) ① 교환(위탁연수 포함, 이하 같음)학생은 수학기간을 마친 후 교환연수학점 인정신청서에 해당대학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학점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해당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해당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31./ 2016.1.27./2017.8.22.)

② 교환학생의 국내 및 국외의 연수학점은 본 대학 교과목 영역에 따라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7.6.4/ 2010.12.6./ 2011.12.1)

③ 교환학생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8학점이내에서, 방학기간의 국제교류프로그램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5.9.18./ 2016.1.27.)

④ 교환연수 및 방학기간 중의 국제교류프로그램 취득학점은 제4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정한다. (개정 2016.1.27.)

⑤ 복수학위과정 학생은 졸업예정학기에 협약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신청서를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약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소속 학부·학과·전공별 졸업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자유선택으로 인정하여 총 졸업학점에만 포함한다. 다만, 타교 복수학위과정 학생이 소속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우리대학 소속 학부·학과·전공별 졸업학점의 4분의 3 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총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신설 2016.1.27./개정 2017.8.22./2018.10.28.)

제75조(학점 교류 수강신청 절차) ① 학점교류를 원하는 학생은 해당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지정하는 수강신청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 학점교류를 원하는 학생은 학점수 제한 및 수업료 납부, 기타 사항에 관하여 본교와 해당대학교 간에 맺은 학점교류협정을 따라야 한다.

③ 학점교류의 신청자격은 재학 중인 학부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지원할 당시의 총 평점평균이 2.8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신설 2016.8.20.)

제76조(학점교류 취득 학점 인정) 학점교류에 의해 타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별로 일괄 교부하는 성적표에 의해 제42조 제6항에 따라 인정한다.

제77조(특별수강신청 절차) ①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개설과목 수강을 원하는 특별수강 대상자는 수강신청기간에 수강허가신청서를 학사팀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8.22.)

② 특별수강 대상자 중 타대학교 재학생은 수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8.17)

1. 소속대학 재학증명서 1부
2. (개정 2005.2.1/ 2008.12.15/ 2009.7.6./ 삭제 2013.8.17)

③ 수강허가를 받은 학생은 지정기간에 수강신청을 마치고 수강과목에 대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8조(특별수강 학점)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특별수강 학점은 제한하지 않으며, 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본교생에 준한다.

제79조(특별수강학생 의무) 특별수강학생은 본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본교 수업 및 학생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판명될 경우 수강기간 중에도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0조(특별수강학점 증명서 발급) 특별수강 학점에 대해서는 특별수강 성적 증명서를 발급한다.

부칙

(1)

-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학칙 제30조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98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198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2. 이 규정 제8조 제2호는 198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1983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조기졸업 기준은 4.00이상인 자라야 한다.
 3. 이 규정 제18조 제6항의 재수강은 198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4. 이 규정 제29조 내지 제31조의 능력별 학점취득(조기졸업)은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5. 이 규정 제30조 제1항의 1983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초과학점 취득기준은 전학기성적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라야 한다.
 6. 이 규정 제37조의 성적평가방법은 198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198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성적평가방법을 적용받는다.
 7. 이 규정 제43조(학사경고)는 198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8. 이 규정 제44조의 유급은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85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제9조 제2항은 198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이 규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학사경고 기준은 198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0 미만인 자로 한다.
- (3)
-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9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제8조 3호의 졸업자격기준과 제16조 제3항의 단서 및 제42조 성적경고 기준은 199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이 규정 제7장 제33조는 198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4)
-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9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16조 제3항의 단서규정은 199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5)
-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9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6)
-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9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5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199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7)
-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9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25조의 2의 개정규정은 199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8)
-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9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 (9)
-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95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10)
-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9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11)
-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2)
-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3)
-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9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 (14)
-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9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15)
-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제 17조 제 2항 대상 제외)은 제 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규정을 적용한다.
 - ③ (경과조치)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제 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교양교과과정을 적용하되 교양계열선택에서 교양필수로 지정하여 이수케 한 것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 ④ (경과조치) 제22조 제10항, 제31조, 제32조, 제40조는 19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16)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①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8년 8월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8조(졸업)제2항은 2000학년도 졸업자(2001년 2월,8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2. 제15조(교양과목의 학점취득) 제2항은 1996이전 입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7조(교육과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1998학년도 졸업자(1999년 2월,8월 졸업)의 제1전공과 1999학년도 졸업자(2000년 2월,8월 졸업)의 교양과정은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4. 제30조(전공심화과정)는 1998학년도 졸업자(1999년 2월,8월 졸업)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19)

①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9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학부통합이전 입학생과 폐지되는 학과 학생에게는 입학일로부터 4년간 입학시의 학과명칭을 부여하며, 해당학생이 휴학 등의 사유로 남아서 학부로 편제될 경우, 새로 소속되는 학부명칭을 부여한다.

2. 신구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한 전공 및 교양과정 학점인정에 관한 기타사항은 교무처장이 따로 정하는 신구 교육과정 병행운영내규에 따른다.

3. 종전의 자연1계열 및 자연과학1학부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자연과학부에 편제된 것으로 하며, 생물학전공은 생명과학전공으로 전공명칭을 변경한다.

4. 종전의 자연2계열 및 자연과학2학부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수학·통계학부에 편제된 것으로 한다.

5. 정보과학부에 설치된 전산학전공은 컴퓨터과학전공으로 전공명칭을 변경한다.

(20)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9년 7월21일부터 시행한다.

(21)

①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9년 12월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15조는 2001년 졸업자부터 적용하며, 개정교양과정에 따른 학점인정은 교무처장이 따로 정하는 별도 경과조치내규에 준한다.

2. 제40조 제6항의 수료 후 졸업논문 제출기한 및 횟수는 2004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22)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24)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5)

①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9조 5항은 200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6)

①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0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시행세칙 제40조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과정 에 관한 학점은 이 규 칙에 의한 평생교육사 과정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

2. 이 학칙 시행세칙 제30조, 제49조 제 6항, 8항은 2001년 3월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7)

①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10조, 제33조, 예체능계학생에 대한 제49조 제4 및 5항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개정 교양과정에 따른 학점인정은 교무처장이 따로 정하는 별도의 경과조치 내규에 따른다.

(28)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4)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5)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36)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37)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8)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7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8조(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전공의 입학정원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의 개정내용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9)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0)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8년 8월 1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제2호, <표1>졸업학점배정표, <표2>교양필수및교양선택이수과정표의 개정 내용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표11>정보자격증의종류의 개정 내용은 2008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41)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8년 11월 24일 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표1>졸업학점배정표', '<표6>교직과목표', '<표7-1>교직표시 과목별기본이수과목(분야)및인정교과목표'의 변경 내용, '<표7-2>교과교육영역과목표'의 신설 내용 및 '<표8>평생교육사과정이수과목표'의 변경 내용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42)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적용한다.

(43)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44)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12월 7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사항) <표 1>의 개정사항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5)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개정내용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46)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49조 제4항의 개정내용은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에게 적용한다.

2. 2009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은 제49조 제9항의 개정사항에도 불구하고, 졸업자격인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수료 학기부터 학교가 부과하는 소정의 특별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하거나, 총장이 따로 정한 공인 영어시험성적을 취득하면 해당되는 졸업자격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단, 영어졸업자격인증 취득 특별과정 신청자격은 영어졸업자격시험에 2회 이상 응시한 자 또는 수료자로 한다.

(47)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30조, 제38조 및 <표1>졸업학점배정표의 전공학점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제13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이후 졸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3. 제15조 제1항, <표1> 및 <표2>의 개정 내용 중 교양필수학점 개정내용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교양선택학점의 개정내용은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4. 제15조 제1항 <표2> 비고란 및 제4항의 개정내용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5. 제33조에서 폐지하는 기존의 교양과목 학점취득특별시험은 2011학년도 2학기까지 시행한다.

(48)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2항, 제32조의2, 제42조 제9항, <표1>졸업학점배정표의 개정 내용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제22조 제6항의 개정내용은 2011학년도 2학기 이후 수강한 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제42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49)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50)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내용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2. 제36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51)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 15조 4항의 개정내용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52)

-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시행세칙은 2012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6조, 제8조, 제63조의 개정 내용과 <표1> 졸업학점배정표의 졸업학점과 교양핵심학점의 개정 내용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53)

-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시행세칙은 201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54)

-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시행세칙은 201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55)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표 1의 법학부, 약학부 전공 졸업학점의 개정 사항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표 1의 중국학 연계전공 졸업학점의 개정 사항은 입학연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3. 표 9의 개정 사항에도 불구하고,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이전 규정에 따른 졸업논문을 신청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56)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표 1>의 교육학부 복수전공 졸업학점 개정사항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표 9>의 개정사항은 2014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3조 제5항의 개정내용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② 제36조 제1항의 4,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의 개정내용과 <표 6>교직과목표의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개정 내용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③ 제49조 제4항의 개정내용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④ 제49조 제9항의 개정내용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2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4학번부터 적용한다.

- ② 표 1의 문화관광학부 문화관광학전공 및 르꼬르동블루의식경영전공 졸업학점의 개정 사항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표 1의 약학부 졸업학점 개정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1~2013학년도 입학생은 총 졸업학점 162, 교양필수 4, 전공필수 84, 전공선택 74, 제1전공학점계 158학점을 적용한다.

④ 표 1의 환경디자인과 졸업학점 개정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하며, 2012학년도 입학생은 전공필수 16, 전공선택 54, 제1전공학점계 70학점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2조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 취득한 재학생은 2013학년도까지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수강신청 확정 후 지정기간에 졸업기준 초과 학점 중 12학점 범위에서 이수 교과목 성적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표 1>졸업학점 배정표상의 각 기준별 학점을 초과한 학점에 한하며, 학점삭제로 인한 평점평균의 변동사항은 장학금 및 조기졸업의 성적기준에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9조 제9항의 개정사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제57조 및 제60조의2의 개정사항은 2013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1.18.>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표 1>의 환경디자인과 졸업학점의 개정사항은 2012학번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 2011학번 이전까지는 제1전공 67학점(필수 16학점, 선택 51학점), 복수전공 42학점(필수 16학점, 선택 26학점)으로 적용한다.

부칙<2015.1.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5조 제2항, 제20조, 제21조, 제31조, 제3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4항의 개정사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 제1항~제3항, 제8조 제1항~제2항, 제15조 제4항, 제30조, 제32조의2 제2항, 제63조 제5항의 개정내용과 <표 1>졸업학점배정표, <표 2>교양필수및교양선택이수과정표, <표 9>졸업논문제 실시의 개정사항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표7-1>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기본이수과목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전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는 개정 기본이수분야의 과목으로 대체 이수한다.

부칙<2015.9.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표9>의 중어중문학부, 의류학과, 영어영문학부의 졸업논문제 형식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74조제3항은 2016학번부터 적용한다.

③ 제49조제10항은 2015학번부터 적용한다. 201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수료생은 영어 졸업자격 특별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2조제5항, 제74조제5항의 개정내용은 2016년 3월 과건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표9> 졸업논문제 실시의 개정사항은 2016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 졸업학점배정표의 개정사항 중 교양필수를 제외한 전공학점의 개정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의류학과는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3.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5조 4항의 개정사항은 2016년 이전 입학생에 모두 적용한다.

② 제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③ <표2> 개정사항은 2016년 이전 입학생에 모두 적용한다.

부칙<2016.8.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1조 제1항 제1호, 제51조 제4항 제4호, 제75조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표 9>의 개정사항은 2017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1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8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11.18.>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6조의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6년 8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 <표1>의 개정사항은 2017학년부터 적용한다.

③ <표2> 교양필수 및 교양선택 이수과정표의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6.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1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8.2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 제28조, 제34조, 제44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74조, 제77조 및 <표8>의 개정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9.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표 9>의 개정사항은 2018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2.9.>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2조의2 제2항 중 취득학점에 대한 개정사항은 2016학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2조 제6항, 제42조 제8항, <표 1>, <표2>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부터 적용한다.

② 제49조 제4항, 제7~8항, 제10항의 개정사항은 2018년 8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③ <표7-1>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교직원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8.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8월 4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표 1>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표 9>의 개정사항은 2019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5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8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표 9>의 개정사항은 2019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표 9>의 개정사항은 2019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2.15.>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8년 9월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부터 적용한다.

③ <표 9>의 개정사항은 2019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2.2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표 9>의 문화관광학전공, 르꼬르동블루의식경영전공, 아동복지학부, 법학부, 경제학부, 영어영문학전공, 테슬(TESL)전공 개정사항은 2019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5.23.>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0조 제4항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 전공선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6.2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8조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9.0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1조의 개정내용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표 9>, <표11>의 개정사항은 2020년 2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의 2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4년 이전 입학생에 대해서는 희망 학생에 한해 소속 학부·학과장·전공주임의 확인 후 적용한다.

③ 제22조 제2항 및 <표 1>의 개정사항은 2020학번부터 적용한다.

④ 제49조 제5항, 제7항, 제8항, 제10항의 개정사항은 2020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2.0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 1항 4호의 개정사항은 2020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6.2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표 9>의 개정사항은 2020년 8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8.27.>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표 1>의 글로벌지식경영전공은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자에 한하여 전공선택 가능하며,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1.3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5조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표9>의 개정사항은 2021년 2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1.07.>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0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표9>의 개정사항은 2021년 2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표1>의 개정사항은 2021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2.03.>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1조, <표1>의 개정사항은 2020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5.1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0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표2>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①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표 9>의 개정사항은 2022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7.0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2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표9>의 개정사항은 2021년 8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표9>의 개정사항은 2022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11.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3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② <표2>의 이수제한 개정사항 중 이과대학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③ <표2>의 이수제한 개정사항 중 경상대학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2.02.1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표1>의 개정사항은 2022학번부터 적용한다.

② <표13>의 교육학부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6.06.>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1조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표 9> 의 IT공학전공, 영어영문학전공, 테슬(TESL)전공의 개정사항은 2022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하고, 경영학부의 개정사항은 2023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표1> 및 <표2>의 개정사항은 2023학번부터 적용한다.
 ② <표9> 중 영어영문학부의 개정사항은 2023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표 1> 졸업학점배정표 (개정 2007.6.4./ 2008.2.18./2008.8.11./2008.11.24./2009.7.6./2009.12.7./ 2010.2.22./2010.12.6./2011.2.28./2011.12.22./2012.2.29./2013.1.30./2013.4.27./2013.6.27./ 2013.8.17./2014.2.14./2014.11.18./2015.1.30./2016.3.1./2017.1.26./2017.6.4./2018.2.6./2018.8.4./201 8.10.28./2019.2.15./2019.12.14./2020.02.01./2020.08.27./2021.01.07./2021.02.03./2022.02.12./2022.0 6.06./2022.12.29.)

계열	대학·독립학부	학부·학과·전공	졸업학점	교양학점		제1전공 학점						복수전공 학점			부전공 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심화과정			다전공과정			필수	선택	계	
						필수	선택	계	필수	선택	계				
인문사회	문과대학	한국어문학부	125	12	15	12	48	60	12	30	42	12	30	42	21
		역사문화학과				12	42	54	12	24	36	12	24	36	
		프랑스어·문화학과				18	42	60	18	18	36	18	18	36	
		중어중문학부				6	63	69	6	36	42	6	36	42	
		독일어·문화학과				18	42	60	18	21	39	18	21	39	
		일본학과				18	36	54	18	21	39	18	21	39	
		문화정보학과				18	36	54	18	24	42	18	24	42	
		문화관광외식학부 문화관광학전공				9	45	54	9	33	42	6	36	42	
		문화관광외식학부 르꼬르동블루 외식경영전공				15	51	66	해당없음			해당없음			
		교육학부				9	57	66	9	42	51	9	33	42	21
자연과학	이과대학	화학부	130	12	15	25	40	65	18	27	45	18	27	45	21
		생명시스템학부				13	53	66	13	41	54	13	29	42	
		수학과				21	42	63	21	33	54	21	21	42	
		통계학과				18	39	57	18	24	42	18	24	42	
		체육교육과				50	25	75	50	20	70	50	10	60	
		무용과				42	28	70	42	16	58	42	-	42	
공학	공과대학	항공생명공학부	130	12	15	51	27	78	51	9	60	46	0	46	21
		인공지능학부				30	42	72	30	24	54	30	12	42	
		지능형전자시스템전공				42	35	77	42	20	62	42	14	56	
		신소재물리전공				46	24	70	46	12	58	46	9	55	
		컴퓨터과학전공				15	57	72	15	39	54	15	27	42	
		데이터사이언스전공				15	57	72	15	39	54	15	27	42	
		기계시스템학부				42	27	69	42	3	45	42	3	45	

계열	대학 · 독립 학부	학부·학과·전공	졸업 학점	교양학점		제1전공 학점						복수전공 학점			부전공 학점				
				교양 필수	교양 선택	심화과정			다전공과정			필수	선택	계					
						필수	선택	계	필수	선택	계								
인문 사회	생활 과학 대학	가족자원경영학과	125	12	15	12	45	57	12	30	42	12	30	42	21				
		아동복지학부				15	45	60	15	30	45	15	21	36					
자연 과학		의류학과	130	12	15	12	53	65	12	30	42	12	30	42					
		식품영양학과				24	42	66	24	33	57	24	12	36					
인문 사회	사회 과학 대학	정치외교학과	125	12	15	18	36	54	15	27	42	15	27	42					
		행정학과				15	45	60	15	27	42	15	27	42					
		홍보광고학과				15	54	69	15	27	42	15	27	42					
		소비자경제학과				18	33	51	18	18	36	18	18	36					
	법과 대학	법학부	사회심리학과	125	12	15	18	39	57	18	24	42	18	24		42			
			법학부				18	51	69	15	30	45	3	33		36			
		경상 대학	경제학부				125	12	15	12	42	54	12	30		42	12	27	39
			경영학부							18	36	54	18	24		42	18	24	42
예체 능	음악 대학	피아노과	130	12	15	56				14	70	42	-	42		42	-	42	
		관현악과				64				10	74	58	-	58		58	-	58	
		성악과				56	14	70	42	-	42	42	-	42					
		작곡과				56	14	70	52	-	52	42	-	42					
자연 과학	약학 대학	약학부(2+4년제)	160	-	-	99	61	16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약학부(통합6년제)	235	12	12	126	85	211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예체 능	미술 대학	시각영상디자인과	130	12	15	31	35	66	31	17	48	31	11	42	21				
		산업디자인과				32	34	66	32	20	52	32	10	42					
		환경디자인과				20	44	64	20	22	42	20	22	42					
		공예과				32	34	66	20	22	42	20	22	42					
		회화과				31	32	63	31	11	42	31	11	42					
인문 사회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	글로벌협력전공	125	12	15	18	36	54	18	24	42	18	24	42					
		앙트러프러너십전공				18	36	54	18	24	42	18	24	42					
	영어영문 학부	영어영문학전공				15	45	60	15	30	45	15	24	39					
		테슬(TESL)전공				15	36	51	15	27	42	15	27	42					
	미디어 학부	미디어학전공				18	45	63	18	30	48	18	24	42					
연계전공		공공인재학전공(36), 국제한국어교육학전공(36), 글로벌비즈니스개발학전공(36), 글로벌지식경영전공(36), 글로벌환경학전공(36), 금융공학전공(36), 기술인문융합전공(36), 기업법무전공(36), 문화예술기획전공(36), 비서학전공(36), 빅데이터분석학전공(36), 상담학전공(36), 세무회계학전공(36), 순환융합인문학전공(36), 스토리텔링전공(36), 인재개발전공(36), 통상학전공(36)																	

*** 학제변동에 따른 이수학점 경과조치**

가.~마. (삭제 2010.12.6.)

바. 졸업학점은 입학학년도의 졸업학점기준에 따르며,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표 2> 교양필수 및 교양선택 이수과정표 (개정 2008.2.18/ 2008.8.11/ 2008.11.24/ 2010.2.22./ 2010.12.6./ 2011.12.22./ 2012.2.29./ 2013.4.27./ 2014.2.14./ 2015.1.30./ 2016.3.15./2016.5.18./2017.1.26./2018.2.6./ 2019.2.22./2020.02.01./2021.01.07./2021.05.14./2021.11.25./2022.12.29.)

구 분	교과목	학점	비고		
			학수번호	이수학기	이수학년
교양 필수	공학영어(TECHNOLOGY AND ENGINEERING)	3 (5과목 중 택 1 하여 이수함)	21104195	모든학기	1학년
	비즈니스영어(BUSINESS AND MANAGEMENT)		21104198	모든학기	1학년
	글로벌미디어영어(GLOBAL MEDIA)		21104199	모든학기	1학년
	관광·문화영어(TOURISM AND CULTURE)		21104200	모든학기	1학년
	커뮤니케이션영어(COMMUNICATION BASICS)		21104197	모든학기	1학년
	디지털시대의사고와의사소통	3	21105203	모든학기	1학년
	세계시민교육과리더십	2	21003464	모든학기	1학년
	진로탐색과역량개발	1	21103530	1학기	1학년
	논리적사고와소프트웨어	3	*21104205	모든학기	2학년
	교양필수 소계	12학점	*논리적사고와소프트웨어 교과목은 2023학년도까지는 2학점으로 운영하며 2024학년도부터 3학점으로 변경		
교양 핵심 선택	제1영역- 자기주도적성장	4개 영역별로 1과목(3학점) 이상 이수 (다만, 우측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지정된 과목을 포함해서 이수해야 함)	[이수의무]		
	제2영역- 글로벌시민		▶이과대학 • 화학과, 생명시스템학부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학생은 제3영역의 '수학개론'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다만 화학과, 생명시스템학부 복수 전공자 중 응용물리 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수학개론' 이수를 면제함		
	제3영역- 창의적문제해결		• 수학과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학생은 '물리학의이해', '물과공기의화학', '생명과학의이해' 중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제4영역- 협력적소통		▶생활과학대학 • 식품영양학과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학생은 '생명과학의이해' 를 반드시 이수해야 함 ▶사회과학대학 • 소비자경제학과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학생은 제3영역의 '경제학개론' 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다만, 소비자경제학과 복수 전공자 중 경제학부 학생은 '경제학개론' 을 이수하지 않고 모든 영역의 다른 과목으로 대체 이수할 수 있음 ▶경상대학 • 경영학부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학생은 제3영역의 '경제학개론' 과 '통계학입문' 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다만, 경영학부 복수전공자 중 경제학부 학생은 '경제학개론' 을, 통계학과 학생은 '통계학입문' 을 이수하지		

구 분	교과목	학점	비고		
			학수번호	이수학기	이수학년
			<p>않고 동일 영역의 다른 과목으로 대체 이수할 수 있음</p> <p>[이수제한]</p> <p>▶이과대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과를 제1전공으로 이수중인 학생은 ‘수학개론’의 수강을 금지함 • 통계학과를 제1전공으로 이수중인 학생은 ‘통계학입문’의 수강을 금지함 <p>▶공과대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소재물리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중인 학생은 ‘물리학의이해’, ‘수학개론’의 수강을 금지함 <p>▶사회과학대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학과를 제1전공으로 이수중인 학생은 ‘행정학개론’의 수강을 금지함 <p>▶경상대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학부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학생은 ‘경제학개론’의 수강을 금지함 		
	교양핵심선택 소계	15학점			
	일반교양선택	자유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사항이 아니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이수 가능. (다만,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학군단에서 주관하는 군사학 교과를 반드시 이수해야 함.) 		
	교양이수학점 총계	27학점 이상			

*** 학제변동에 따른 이수학점 경과조치**

- 가. 2020년 교양 개편에 따라 19학번까지 교양 핵심의 이수 학점은 2019년까지 이수한 교양 핵심 선택의 이수학점을 인정하여 졸업 시까지 교선 핵심의 영역 구분없이 15학점을 이수하면 교양 핵심의 이수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 나. 19학번까지 법학부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 학생에 대해 교양의 제2외국어 1과목 이수 의무 기준을 폐지함.
- 다. 14학번까지 법학부를 제외한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영어영문학부, 미디어학부 소속의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 학생에 대해 교양의 제2외국어 1과목 이수의무기준을 폐지함
- 라. 2018학년도, 2020학년도 교양 필수 교과목 개편으로 17학번까지 학생들은 융합적사고와글쓰기(21002930, (구)글쓰기와읽기), 비판적사고와토론(21002931, (구)발표와토론), 세계시민교육과리더십(21003464, (구)역량개발I) 교과목 모두를 이수하고, 영어토론과발표(21000082), 영어쓰기와읽기(21000083) 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하거나 신설 영어교양필수 중 한 과목을 이수하면 교양필수영역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18~19학번의 학생들은 이에 더하여 진로탐색과역량개발(21103530)을 이수하면 교양필수영역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마. 2022학년도 이후 약학부(통합6년제) 입학생은 교양핵심선택 4개 영역별로 1과목(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교양필수를 포함한 교양 교과목의 총 이수학점은 2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신설 2022.02.12.)

- <표 3> 삭제
- <표 4> 삭제 2008.11.24
- <표 5> 삭제 2008.11.24
- <표 6> 삭제 2019.06.20
- <표 6-1> 삭제 2019.06.20

<표 7-1> 삭제 2019.06.20

<표 7-2> 삭제 2019.6.20

<표 8> 평생교육사 과정 이수과목표 (개정 2008.11.24./ 2013.6.27/ 2017.8.22.)

1.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선택과목은 영역별로 1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필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평생교육관련과목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자는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는 자는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성적은 평생교육관련과목 각각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3.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수행한 4주간의 현장실습을 필하여야 한다.
4.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학기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원을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사 과정 이수과목표> (개정 2019.04.24)

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사항
필수	21002569 21002570 21002572 21002574 21009877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	필수 (5과목)
평생교육 실천영역	21000241 21002426	청소년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1과목 이상 이수
평생교육 방법영역	21000209 21000224 21002571 21002573 21002427 21002577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지역사회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원격교육론 기업교육론	1과목 이상 이수

<표 9> 졸업논문제 실시 (개정 2007.6.4/ 2008.11.24/ 2010.2.22./ 2010.12.6./ 2012.6.14./ 2013.1.30./2013.6.27./2013.8.17./2013.12.7./2014.2.14./2014.8.20./2015.1.30./2015.9.18./ 2016.1.27./2016.3.15./2016.5.18./2016.8.20./2016.11.18./2017.1.26./2017.9.27./2017.12.9./2018.8.4./2018.10.28./2019.1.5./2019.2.15./2019.04.24./2019.11.14./2019.12.14./2020.06.20./2020.11.30./2021.01.07./2021.05.14./2021.07.08./2021.10.19./2022.06.06./2022.12.29.)

대학·독립학부	학부·학과·전공	졸업논문제 형식	
문과대학	한국어문학부	졸업논문	
	역사문화학과	졸업논문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졸업논문 or DELF시험 B1수준 취득 중 택 1	
	중어중문학부	졸업논문, 신HSK 5급 이상(180점 이상) 중 택 1	
	독일언어문화학과	다음 요건 중 택 1 1. 졸업논문 2. Goethe-Zertifikat B2 : 「gut」 이상(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3. Goethe-Zertifikat C1 : 「ausreichend」 이상(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4. Goethe-Zertifikat C2 : 「ausreichend」 이상(400점 만점 중 240점 이상 :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각 모듈에서 60점 이상 취득) 5. TestDaF (4개 영역 등급(TDN) 합계 16 이상/ 단, 1개 영역에서 TDN2 이하를 받은 경우는 제외) 6. DSH (합격)	
	일본학과	다음 요건 중 택 1 1. JPT 700 이상 및 졸업논문 2. JLPT 1급(N1) 및 졸업논문 3. JPT 880이상 다만, 11학번까지는 졸업논문, JLPT1급(N1), JPT 850 중 택 1	
	문헌정보학과	졸업논문, TOEIC 800 이상, TOEFL IBT90 이상, [국가공인] 한자능력검정시험 1급, 정보처리기사 중 택 1	
	문화관광학전공	내국인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외국어공인자격증 3개(제1외국어, 제2외국어, 제3외국어) • 제1외국어: 영어 TOEIC 850이상 (18학번부터) / 800이상 (17학번까지), TOEFL 550(CBT213, IBT80) 이상, TEPS 610 이상(New TEPS 331 이상), IELTS 6.0 이상 중 택 1 • 제2외국어: 외국어 중급이상 1개 • 제3외국어: 외국어 하급이상 1개(제2외국어로 선택한 외국어 제외) * 제2외국어, 제3외국어의 구체적 통과 기준은 학과에서 정하여 별도 공지함 2. 인턴십 200시간 이수 필수 3. 제1호의 제 2외국어 또는 제3 외국어를 면제받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별도의 제1외국어, 제2외국어 통과 기준 및 추가 자격증 취득 요건은 학과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외국인	(17학번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한국어 TOPIK 5급 이상 2. 인턴십 200시간 이상 이수 필수 (18학번부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외국어공인자격증 3개(제1외국어(자국어), 제2외국어, 제3외국어): • 제1외국어 면제(자국어로 인정) • 제2외국어 내국인 학생 기준과 동일 • 제3외국어 한국어 TOPIK 4급 이상 2. 인턴십 200시간 이상 이수 필수
		르꼬르동블루 외식경영전공	내국인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외국어공인자격증 3개(제1외국어, 제2외국어, 제3외국어)

대학·독립학부	학부·학과·전공	졸업논문제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외국어: 영어 TOEIC 850이상 (18학번부터) / 800이상 (17학번까지), TOEFL 550(CBT213, IBT80) 이상, TEPS 610 이상(New TEPS 331 이상), IELTS 6.0 이상 중 택 1 • 제2외국어: 외국어 중급이상 1개 • 제3외국어: 외국어 하급이상 1개(제2외국어로 선택한 외국어 제외) <p>* 제2외국어, 제3외국어의 구체적 통과 기준 은 학과에서 정하여 별도 공지함</p> <p>2. 인턴십 BI 300시간, AI 300시간 이수 필수</p> <p>3. 제1호의 제 2외국어 또는 제3 외국어를 면제받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별도의 제1외국어, 제2외국어 통과 기준 및 추가 자격증 취득 요건은 학과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p>
	외국인	<p>(17학번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p> <p>1. 한국어 TOPIK 5급 이상</p> <p>2. 인턴십 BI 300시간, AI 300시간 이수 필수</p> <p>(18학번부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p> <p>1. 외국어공인자격증 3개(제1외국어(자국어), 제2외국어, 제3외국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외국어 면제(자국어로 인정) • 제2외국어 내국인 학생 기준과 동일 • 제3외국어 한국어 TOPIK 4급 이상 <p>2. 인턴십 BI 300시간, AI 300시간 이수 필수</p>
	교육학부	졸업논문
이과대학	화학과	종합시험, 실험연구인턴(6개월이상), 대한화학회 주관 화학적성시험 중 택1
	생명시스템학부	종합시험, 실험연구인턴(2년) 중 택1
	수학과	-2013학번 이전: 종합시험 -2014학번 이후: 종합시험 및 콜로키움 참석
	통계학과	종합시험
	체육교육과	종합시험
	무용과	실기발표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부	졸업논문, 인턴연구발표 중 택1
	IT공학전공	졸업논문
	전자공학전공	졸업논문
	응용물리전공	종합시험, 졸업논문, 캡스톤디자인 결과보고서, 연구인턴 보고서 중 택1
	컴퓨터과학전공	• 제1전공 이수자: 작품발표 다만, 12학번까지의 학생 중 제1전공 이수자는 작품발표, 종합시험 중 택 1, 심화전공(세부전공 이수자 포함)이수자는 작품발표로 함
	소프트웨어융합전공	• 복수전공 이수자: 작품발표, 종합시험 중 택 1
	기계시스템학부	졸업논문, 작품발표 중 택1
생활과학 대학	가족자원경영학과	졸업논문, 건강가정사 자격취득, 토익 800 이상 중 택1
	이동복지학부	졸업논문, 토플(IBT) 90 이상, 토익 800이상, TEPS 650 이상(NEW TEPS 355 이상) 중 택 1
	의류학과	종합시험, 실기발표, 프로젝트 중 택1
	식품영양학과	종합시험
사회과학 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논문, 토플(IBT) 92 이상, 토익 850 이상, 캡스톤디자인 결과보고서,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중 택 1
	행정학과	졸업논문, 토플(IBT) 92 이상, 토익850 중 택 1
	홍보광고학과	졸업논문, 전국 규모 공모전 수상, 토플 IBT 90점 이상, 토익 850점 이상 중 택 1
	소비자경제학과	졸업논문, 토플(IBT) 80 이상, 토익800 중 택 1
	사회심리학과	졸업논문, 사회조사분석사2급, 인사조직심리사, 임상심리사 2급 중 택 1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논문, 토플(IBT) 71 이상, 토익700, TEPS 625 이상(NEW TEPS 340 이상) 중 택 1

대학· 독립학부	학부·학과·전공	졸업논문제 형식	
경상대학	경제학부	졸업논문, 토플(IBT) 81 이상, 토익810 중 택1	
	경영학부	졸업논문, 졸업프로젝트, 토플(IBT) 72이상, 토익 800이상 중 택1	
음악대학	피아노과,	실기발표	
	관현악과	실기발표	
	성악과	실기발표	
	작곡과	실기발표	
약학대학	약학부	종합시험, 졸업논문 중 택 1	
미술대학	시각영상디자인과	실기발표	
	산업디자인과	실기발표	
	환경디자인과	실기발표	
	공예과	실기발표	
	회화과	실기발표	
글로벌서 비스학부	글로벌협력전공	외국인	학과 졸업시험
		내국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영어는 토플 IBT 101 이상, 토익 900 이상, IELTS(A) 6.5 이상, SPA Level 7 이상 중 택 1 2. 제 2 외국어는 불어의 경우 DELF A2 이상, FLEX(읽기,듣기) 2C 이상, 스페인어의 경우 DELE B1 이상, FLEX(읽기,듣기) 2C 이상, 일어의 경우 JPT C(610점) 이상, FLEX(읽기,듣기) 2C 이상, 중국어의 경우 신HSK 4급 이상, FLEX(읽기,듣기) 2C 이상, 독일어의 경우 Goethe-Zertifikat A2, TELC A2 이상 중 택 1 (이 외의 외국어도 위 등급에 준하는 점수를 획득하였을 경우에는 전공주임교수의 허가 하에 인정 가능함) 3. 상기 영어 공인시험 중 동일시험에 3회 이상 또는 제 2 외국어 공인시험 중 동일시험에 2회 이상 응시하여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한해 학과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졸업시험으로 대체 할 수 있다.
글로벌서 비스학부	양트러프러너십전공	외국인	학과 졸업시험
		내국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영어는 토플 IBT 101 이상, 토익 900 이상, IELTS(A) 6.5 이상, SPA Level 7 이상 중 택 1 2. 제 2 외국어는 불어의 경우 DELF A2 이상, FLEX(읽기,듣기) 2C 이상, 스페인어의 경우 DELE B1 이상, FLEX(읽기,듣기) 2C 이상, 일어의 경우 JPT C(610점) 이상, FLEX(읽기,듣기) 2C 이상, 중국어의 경우 신HSK 4급 이상, FLEX(읽기,듣기) 2C 이상, 독일어의 경우 Goethe-Zertifikat A2, TELC A2 이상 중 택 1 (이 외의 외국어도 위 등급에 준하는 점수를 획득하였을 경우에는 전공주임교수의 허가 하에 인정 가능함) 3. 상기 영어 공인시험 중 동일시험에 3회 이상 또는 제 2 외국어 공인시험 중 동일시험에 2회 이상 응시하여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한해 학과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졸업시험으로 대체 할 수 있다.는 졸업시험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영어영문 학부	영어영문학전공	1. 토플(IBT) 95 이상/토익 870 이상/뉴텝스 350 이상/ IELTS 7.0 이상/ 토익 스피킹 IH 이상과 토익 라이팅 170이상/오픽 IH 이상과 토익 라이팅 170이상 중 택1 2. 상기 영어공인 시험에 3회 이상 응시하여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한해 학과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졸업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테슬(TESL) 전공	1. 토플(IBT) 95 이상/토익 870 이상/뉴텝스 350 이상/ IELTS 7.0 이상/ 토익 스피킹 IH 이상과 토익 라이팅 170이상/오픽 IH 이상과 토익 라이팅 170이상 중 택1 2. 상기 영어공인 시험에 3회 이상 응시하여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한해 학과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졸업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미디어학 부		졸업논문, 토플(IBT) 100 이상, 토익 870 중 택 1	

* MATE는 정규 MATE성적은 인정하되, G-MATE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표10> (개정 2010.2.22./2010.3.8./2016.5.18./2017.6.4./식제 2018.2.6.)

<표 10-1> (신설 2013.8.17/삭제 2018.2.6.)

<표11> 정보자격증의 종류(개정 2008.8.11./2009.12.7./2014.8.20./2017.9.27./삭제 2019.12.14)

<표 12> 한국어능력인증시험(신설 2014.2.14/ 개정 2017.12.9.)

계열	자격 명칭	자격 관리자	비 고
예체능	TOPIK 3급	국립국제교육원	정원 외 외국인전형 입학생에 한함
일반	TOPIK 4급		
※ 영어트랙 입학자는 한국어능력인증을 면제함			
※ 입학 전형 시 제출한 상기 공인 한국어인증시험의 결과로 적용 가능함			

<표 13> 세부전공 운영 학부·학과·전공 및 세부전공 (신설 2019.12.14./개정 2022.02.13)

대 학 · 독립학부	학부 · 학과 · 전공	세 부 전 공		
문과대학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국제한국어교육전공		
		미디어문예창작전공		
	중어중문학부	중어학전공		
		중문학전공		
		통번역전공		
이과대학	생명시스템학부	생명과학전공		
		의약과학전공		
	무용과	한국무용전공		
		발레전공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학부	아동·청소년복지전공		
		아동보육·교육전공		
		아동심리상담전공		
		바이올린전공		
음악대학	관현악과	비올라전공		
		첼로전공		
		콘트라베이스전공		
		플루트전공		
		오보에전공		
		클라리넷전공		
		바순전공		
		색소폰전공		
		호른전공		
		트럼펫전공		
		튜바전공		
		테너트롬본전공		
		베이스트롬본전공		
		유포니움전공		
		타악기전공		
		약학대학	약학부	응용약학전공
				임상약학전공
산업약학전공				
미술대학	회화과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영미문학전공		
		영어학전공		
		통번역전공		

학부수업 및 휴·보강관리 내규

- 제 정: 2017년 9월 14일
- 개 정: 2019년 7월 4일
- 관리부서: 교무처 학사팀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등에서 정한 수업시간 및 휴·보강 관리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학부과정에서 개설한 강좌를 담당하는 모든 교강사(전임 및 비전임)를 대상으로 한다.

- ② 인턴십, 현장실습, 사회봉사 등 교실수업이 아닌 강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기타 예외 강좌는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관리절차) 교강사, 학부·학과 및 해당 교학팀은 다음과 같이 학기중 수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① 학사팀은 학기중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휴강이 필요한 경우 지정보강일을 정하여 15주 수업일정을 개강 전 공지한다. 학교 전체의 학생지도활동을 위하여 학교에서 정한 휴강일에 대해서는 지정보강일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수업을 담당하는 교강사는 강의시간표에 기재된 수업일시 및 15주 수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학부·학과는 소속 전공에서 개설한 강좌의 휴강 및 보강계획을 승인하고 학기 중 강의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리한다.
- ④ 학사팀 및 각 교학팀은 전체 학부 교과목의 휴·보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한다.
- ⑤ 종강 후 교강사는 전자출석부에 기록된 수업 일자 및 학생들의 출결 결과를 점검하여 전자출결시스템에 저장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학부·학과는 소속 전공에서 개설한 전체 강좌에 대해 전자출석부 확정처리가 모두 완료 수 있도록 관리한다.
- ⑥ 학사팀은 총 개설강좌의 수업 운영결과를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휴강 및 보강 절차) ① 학사력에 없는 휴강, 결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 학부장·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휴·보강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학기내에 보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휴강 발생일 2주 이내에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② 보강은 담당 교강사 본인이 교실 강의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강 및 e-강의를 통한 보강을 허용한다.
- ③ e-강의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제작·운영하여야 한다.
- ④ 휴강 및 보강일정을 전자출결시스템에 등록하여 출석부에는 교강사가 실제 수업한 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출석부는 교강사의 출결강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제5조(관리) ①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휴·결강 및 보강을 실시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② 학기당 수업일수가 부족한 교강사의 명단은 소속 학부장·학과장 및 교원 인사부서에 통보하며, 학사팀은 해당 교강사에게 주의촉구공문을 발송하여 수업 개선하도록 한다.
- ③ 학기당 수업일수가 부족한 전임교원은 교수업적평가 교육영역에서 감산한다.
- ④ 학기당 수업일수가 부족한 비전임교원에게 강의를 배정할 경우, 소속 학부·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해당 교학팀에 수업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기당 수업일수 부족이 2회 누적 시에는 학부 강의 배정을 제한한다.

부 칙<2017.9.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부 성적 관리에 관한 내규

- 제 정 : 2019년 10월 12일
- 개 정 : 2022년 9월 28일
- 관리부서 : 교무처 학사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한 학부의 성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본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 개설한 학부의 모든 정규 교과목에 적용한다.

② 이 내규 외의 내용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성적평가

제3조(성적평가 기준) ① 교강사는 성적평가 항목 및 반영비율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강의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수업기간 중 성적평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수강학생들에게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고 강의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성적평가) ① 담당교수는 학기 중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성적을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학기말에 이를 종합하여 엄정한 최종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적은 학칙시행세칙 42조에 따라 <상대평가 일반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성적평가 시 소숫점 이하의 수는 절사한다.

④ 제 2항에도 불구하고 교과목 성격상 성적등급분포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학사교육과정위원회 심의 및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상대평가 일반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상대평가 특별기준) ① 상대평가 일반기준 적용이 어려운 교과목은 다음의 교과목은 상대평가 특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상대평가 특별기준을 적용하는 교과목이더라도 A등급의 분포는 해당 과목 수강인원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2.31.)

1. 상대평가 대상 인원이 10명 이상 20명 이하인 전공이론과목
2. 실험·실습·실기 시간 포함 전공교과목
3. 교원자격 취득에 관한 운영 내규 <표 1-1> 교직과목표상의 교직이론 및 교직 소양 교과목
4. 외국어 강의
5. (삭제 2022.09.28.)
6. (삭제 2022.09.28.)
7. (삭제 2019.12.31.)

② 상대평가 특별기준과 절대평가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절대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절대평가 및 P/F) ① 교과목 성격상 상대평가 적용이 어려운 과목은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상대평가 대상 인원이 10명 미만인 과목
2. 교수법 적용 교과목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교육혁신원 지정 교과목 (개정 2022.09.28.)
3. 음악대학 1:1 실기

4. 교원자격 취득에 관한 운영 내규 <표 1-1> 교직과목표상의 교육실습 과목(교육봉사 제외)
 5. 교육실습에 준하는 학과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과목
 6. 군사학 교과목
 7. 영어교양필수(개정 2019.12.31.)
- ② 절대평가 적용 교과목에 대해서는 전공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16조 3항에 의거 3년간 성적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절대평가 평가현황을 관리 감독하며 분석결과에 따라 상대평가 과목으로 변경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③ 교과목의 성격상 성적등급 부여가 적당하지 않은 다음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P/F(합격·불합격)교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P/F교과목의 Pass기준은 60점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강사가 Pass기준을 강의계획서에 별도로 명시하여 운영하는 교과목의 경우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교수의 학생 분담 지도로 상대평가가 어려운 교과목
 2. 1개의 공동 과제 수행으로 그 결과물에 대하여 상대평가가 어려운 교과목
 3. 외부기관의 평가가 포함되어 상대평가가 어려운 교과목
 4. 진로지도 또는 외부자 특강 중심 교과목
 5. 그 외 상대평가가 어려운 교과목

제3장 성적계산

제7조(평점평균의 백점 환산기준) ① 평점평균의 100점 환산기준은 학칙시행세칙 제 42조 <성적평가기준표>에 따른다.

② 성적평가기준표에 명시된 평점은 점수 구간의 최대 점수로 변환하며 그 외 평점평균은 점수 구간 범위 내에서 비례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환산기준은 따로 정한다.

③ 백점만점 환산점수는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한다.

제8조(평점평균 기준의 변환) ① 우리 대학의 평점평균은 4.3만점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성적표에는 4.3만점 점수 및 4.5만점 기준으로 변환한 성적을 병기하며, 4.5만점 기준 평점 변환 기준은 따로 정한다.

③ 평점평균은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제9조(성적 공정성 및 성적자료의 보관) 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② 담당교수는 성적평가표와 함께 성적산출근거자료(문제지, 답안지, 각종 과제물 등)를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엄정한 성적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 시 성적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교원의 자녀가 부득이하게 부모 교원의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교원은 자녀의 성적평가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최종 성적 부여 시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사팀에 제출하여 학사교육과정위원회에서 성적 공정성 여부에 대해 확인받아야 한다.

④ 학칙 시행세칙 제 22조 제9항 미이행 및 특혜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무처장은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04.)

제4장 학기우등생 선발

제10조(선발조건) ① 매 학기 각 학부·학과·전공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최우등생 및 우등생으로 선발하여 총장 명의로 표창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개정 2021.06.10.)

② 학기우등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10.)

1. 해당 학기의 이수학점이 15학점(4학년은 12학점)이상인 학생. 단 이수학점 중 P/F평가 학점은 최대 3학점

까지만 포함 가능

2. 해당 학기 평점 평균이 3.0 이상이며, 학기 취득 성적 중 F 등급이 없는 학생
3. 학기우등생은 본교에서 취득한 평점으로만 선발하며, 타교 이수과목은 제외함

③ 학부·학과·전공별 최우등생 선발인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6.10.)

1. 최소 2개 학년 이상 재학생이 있는 학부·학과·전공을 대상으로 하며, 재학생 160명 당 1명을 선발하며, 산술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2. 전체 재학생수가 80명 미만일 경우, 3개 학년 이상의 재학생이 있는 학부·학과·전공에 한하여 1명을 선발한다.

④ 학부·학과·전공의 학년별 우등생 선발인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06.10.)

1. 학년별 1명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학년별 재학생이 40명 이상인 경우 40명 당 1명을 선발하며, 산술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최우등생이 선발된 학년은 차점자로 선발한다.

⑤ 학제개편으로 신입생 모집이 중단된 학부·학과·전공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우등생 선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06.10.)

제11조(선발기준) ① 선발단위 별 정규학기 평점평균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② 최우등생은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학년별 1명씩 순차적으로 선발한다.

③ 동점자 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 순으로 한다.

1. 당해 학기 취득학점 수가 많은 자(P/F과목 및 타교 이수과목 학점 제외)
2. 당해 학기 전공 취득학점 수가 많은 자(이수하고 있는 전공에 대한 전공교과목만 산입함)
3. 당해 학기 전공 평점평균이 높은 자
4. 전 학년 전체 누계 평점평균이 높은 자
5. 4개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가 생기면 모두 학기 우등생으로 선발한다.

제5장 성적경고자 관리

제12조(성적경고자 특별지도) ①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70 미만으로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지도 하여야 한다.

1. 지정된 기간에 평생지도교수 상담을 실시한다.
2. 평생지도교수 상담을 통해서 학생 생활 등 학교기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상담 대상자를 지정하여 기관상담을 실시한다.
3. 학사팀에서는 수강 및 성적관련 학사지도를 실시한다.
4. 교수학습센터에서는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학습력향상 워크숍을 실시한다.

② 성적경고 학생이 평생지도교수 상담 및 학습력향상 워크숍 참여 등 권장 활동에 모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성적경고자 장학금 지급 기준은 따로 정한다.

부 칙<2019.10.1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조 제1항 제7호 및 제6조 제1항 7호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부터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0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6.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9.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사항은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전공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 제 정 : 2017년 6월 16일

■ 개 정 : 2022년 9월 28일

■ 관리부서 : 학사팀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한 학부의 전공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 개설한 학부의 모든 정규 전공교과목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외의 내용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전공교육과정 편성방향) ① 전공교육과정은 우리대학의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구현하고, 우리대학 인재상을 반영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② 전공교육과정은 학문 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대학교육을 선도하고 각계의 사회적 요구를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교육의 직접적 수혜자인 학생의 진로와 요구를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전공교육과정은 학문의 기초과정부터 심화과정까지 망라하여 편성하되, 교과구분, 학생진로 적합성, 이수단계, 과목 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전공이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전공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절차) ① 전공 교육과정의 개편주기는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여 매년 사회수요 및 학생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신규학과와 교육과정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수시 개편할 수 있다.

② 각 전공은 4년을 주기로 학과발전계획에 따른 전공교육과정의 운영결과를 자체진단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③ 전공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절차는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학부·학과·전공(이하 '학과'라 한다)에서는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관련 학습자의 요구사항 및 진로, 사회적 수요를 조사·분석한다.

2. 관련 전공분야의 현장실무전문가, 해당 학과(부)의 졸업생, 해당 학과(부)의 재학생을 포함하여 학과 소속 교수의 의견을 수렴한다.

3.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안을 수립하고 전공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합의된 개편안을 도출한다. 반드시 개편안을 소속 학과 교수 전원에게 공지하고 연구년 및 휴직 교수를 제외한 소속교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학과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안 전산 입력 후 소속교원이 날인한 교육과정개편 서류를 각 교학팀에 제출한다.

5. 타 학과 과목에 대한 전공인정 교과목의 신설·폐지·변경의 경우 해당 학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한다. (신설 2021.10.22.)

6. 학사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승인 내용을 적용하고 승인결과는 각 학과로 통보한다. (개정 2021.02.05./호번호변경 2021.10.22)

7. 승인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문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요청은 1회에 한하며, 해당 미승인 건과 동일·유사한 교과목의 개편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호번호변경 2021.10.22.)

8. 교육과정 개편은 개편 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편 승인 후 재학생에 대한 적용방안이 필요한 경우 각 학과는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교무처장 승인 후 시행한다. (호번호변경 2021.10.22.)

제5조(전공 교육과정 편성기준) ① 전공교육과정에는 학과의 필요에 따라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을 둘 수 있

다.

② 전공교육과정은 세부전공 운영단위와 비운영단위에 따라 다음의 학점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세부전공 운영단위는 학칙 별표 3에 따른다.

1. 세부전공 비운영단위: 전공 이수학점(전공 졸업학점) × 3
2. 세부전공 운영단위: 전공 이수학점(전공 졸업학점) × 3 × 1.2

③ 학부·대학원 연계 교과목, 교직운영학과 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교과목은 전공편제가능 학점수 계산 시 제외한다.

제6조(전공 교육과정 이수학점 설정 기준) ① 이수학점 설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이수학점은 해당 학문분야의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최소학점으로 설정한다.
2.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학생의 자율선택 여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확대, 수업선택권 보장,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활성화 등을 위해 전공 이수학점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3. 학부·학과·전공의 현재 및 향후 교육여건(전공선택 인원, 실험실 수용능력, 교원 수 등)을 고려한다.
4. 단과대학별 또는 계열별 전공기준학점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학문 성격 또는 전공운영 특성에 따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한다.

② 제1전공 심화과정 이수학점 기준은 복수·연계·부전공 이수를 선택하지 않은 제1전공 소속 학생을 위한 이수학점으로 51~70학점 이내로 하되, 전공이수학점 중 전공필수학점은 전공이수학점의 1/3범위 내로 지정한다.

③ 제1전공 다전공과정 이수학점 기준은 다전공과정 이수자(복수·연계·부전공 이수를 선택한 제1전공 소속 학생)를 위한 이수학점으로 36~42학점 이내로 한다.

④ 복수전공 이수학점 기준은 타 학부·학과·전공의 학생을 위하여 소속 학부·학과·전공이 설치·운영하는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36~42학점 이내로 하되 연계전공은 36학점 이상으로 지정한다.

⑤ 제1전공 다전공과정과 복수전공의 전공필수학점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전공 교육과정 개편 원칙) ① 전공 교육과정 개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공 교육과정 개편은 학생들에 대한 학사지도를 고려하여 전공별로 연차 계획 하에 시행하도록 한다.
2. 소속 학생들의 전공교육과정 이수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개편을 시행한다.
3. 전공과목 중 교직원 관련 교과목은 교원자격검정 관련 규정에 따라 개편하고, 연계전공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은 해당 전공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개편한다.
4. 1, 2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양필수 및 교양핵심 교과목 학점을 고려하여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② 전공졸업학점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공졸업학점은 입학년도별로 적용하도록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공졸업학점배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별지서식2]
2. 전공졸업학점의 변경은 개편 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급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급적용 입학년도를 추가 기재하도록 한다.
3. 전공필수학점은 개편 학년도에 편제된 전공필수과목 학점의 합과 동일해야 한다.
4. 복수전공의 전공필수학점은 제1전공(다전공과정)의 전공필수학점과 동일하게 설정하며, 복수전공의 학점이 해당학과 전공필수학점 이하일 경우 전공학점은 모두 전공필수학점으로 설정해야 한다.

③ 전공교과목 신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학부·학과·전공 교수회의에서는 신설과목의 교수요목 자료를 검토하고 학과 내 또는 타 학과 유사교과목이 없는 경우에만 신설한다.
2. 교과목 신설은 원칙적으로 편제학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최근 2년간 주관 교과목 개설실적이 편제학점의 80%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신설을 승인할 수 있다.
3. 유사 교과목이 타 학과에 있는 경우에는 교과목 신설 대신 학과 간 협의를 통해 타과 교과목을 전공 인정교과목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개편에 반영한다.
4. 신설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교수요목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별지서식1]

5. 교과목 이름은 띄어쓰기 없이 15자 이내로 정하며, 교과목의 특성 상 2개 학기 이상 개설해야 할 경우 로마자 I·II·III 등으로 그 선·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교과목 이름에 단어를 나열할 경우 ‘·’(가운뎃점)으로 표기한다.

④ 교과목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공과목은 신설 후 4년간 변경 없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과목 변경 후 2년간은 교과목명 변경, 이수학기 변경, 교과구분 변경, 학점 수 및 수업시간 수 변경 등 동일 항목의 재변경을 금지한다.
3. 타학과 교과목의 인정생성·폐지·변경은 신설 및 변경 년도에 상관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⑤ 교과목 폐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동안의 개설현황 및 수강신청 현황을 기준으로 개설하지 않은 과목, 폐강빈도가 높고 수강인원이 저조한 과목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2. 최근 3년 동안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폐강과목 포함)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년간 폐지를 보류할 수 있다.

⑥ 전공과목 이수단계 지정 및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수단계는 권장 이수학년을 지정하며 복수학년을 지정할 수 있다.
2. 학부·학과·전공에서는 위 학년별 이수단계를 고려하여 학생들이 이수학년에 맞게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수학년과 맞지 않은 교과목은 교과개편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전공과목 개설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공과목은 전학기 개설과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개설을 승인하는 교과목, 수강요청이 많아 한 학기로는 수강인원을 수용하기 어려운 교과목, 과목 특성상 전학기 개설이 필요한 교과목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기 개설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학과 교과목 운영상 소수인원 수강, 특수 목적 강좌 등 매년 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격년 개설(짝수년 또는 홀수년 운영)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⑧ 현장실습 교과목은 교육부의 현장실습과목 운영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신설 및 운영하도록 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점인정 과정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⑨ 세부전공 교과목 편성 및 개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세부전공의 이수는 입학년도별 교육과정을 따른다. 다만, 교육과정개편으로 세부전공 인정 교과목으로 추가된 교과목은 개편 전 세부전공 교육과정에도 추가한다.
2. 동일 전공내의 세부전공 간 교과목 이동은 지양한다.

⑩ 교직 교과목 편성 및 개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직기본이수 교과목은 전공과목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직기본이수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의 폐지 또는 변경 시 반드시 교원양성센터와 사전협의 하도록 한다.
3. 교과교육영역의 전공 교과목의 폐지 및 개설학기 변경은 불가하다.

⑪ 학부·대학원 연계 교과목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학부·대학원 연계교과목 지정은 학부 학생이 대학원과정의 과목을 심화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계교과목은 석사과정 전공과목으로 6개 교과목 이하로 설정하며(공통과목 지정 불가), 석사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전공교육과정 학점 및 수업시간 설정) ①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동안 15시간 이상의 수업(주당 1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 과목은 1학기 동안 30시간 이상(주당 2시간)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론 및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다음의 기준으로 구분한다.

1. 이론과목: 전문학술적 이론 및 연구방법을 탐구 학습하는 등 강의중심 과목(강의, 세미나, 토론 및 발표, 어학강좌 등)
2. 실습과목: 전문학술적 이론의 검증 및 체득을 위한 실험·실습·실기 과목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별도의 장비

를 갖춘 실험·실습·실기실에서 진행)

- 학문분야별 연구방법론 체득을 위한 실험실습 교과목
- 숙련된 기술습득을 위한 실기 교과목(예체능계)

- 이론의 현장적용으로 문제 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및 인턴십 교과목실기 교과목: 숙련된 실제의 기능이나 기술습득을 위한 교과목

3. 이론 및 실험·실습·실기 병행 교과목: 강의 및 실습 병행 교과목

③ 전공교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전공교육과정 적용 및 운영) ① 전공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편절차에 따라 해당 학년도 전공교육과정으로 편제된 교과목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로 다른 학과 전공교육과정에 동일·유사교과목이 편제되어 있고, 해당 교과목의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동일·유사교과목 인정절차를 통해 이를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동일·유사교과목 인정 절차는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1.10.22.)

② 전공교육과정의 적용 및 운영은 교무처 학사팀이 담당한다. 전공교육과정의 특성화를 위해 연계전공 교육과정은 기초교양대학 교학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1.02.05./호번호변경 2021.10.22)

③ 학사팀은 전공교육과정 개편결과를 적용 학년도 개시일 전에 전체 학생에게 공고하고, 매 학기 개설현황 및 운영결과를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8.11.30./호번호변경 및 개정 2021.10.22)

제10조(전공교육과정 개설학점 및 분반기준) ① 매학기 전공교육과정 개설권장학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9.28.)

1. 주관학과별 전공 개설권장학점은 전공 개설과목 중수를 기준으로 약학부 99학점, 법학부·경영학부 51학점, 예체능계열 학과 42학점, 일반학과 39학점으로 정하고 2개의 전공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1.5배로 한다. (개정 2022.09.28.)

2. 직전학기의 제1전공 선택자 수 + 복수전공 선택자 수의 1/2 + 부전공 선택자 수의 1/3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명 단위로 전공 개설권장학점을 3학점씩 추가한다. (개정 2022.09.28.)

3. (삭제 2022.09.28.)

② 분반 개설 기준

1. 교과목 개설 분반개수는 최근 3년 이내 해당 과목 평균 수강인원을 교과 유형별 최소 수강인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수점이하 반올림)을 기준으로 하며 교과 유형별 최소 수강인원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1.02.05.)

구분	이론강의	이론및실험·실습·실기 병행강의	실험·실습·실기강의	외국어강의(이론)
최소 수강인원	50명	40명	20명	30명

2. 개설강좌의 수강정원은 교과 유형별 최소 수강인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3. 실험·실습·실기실의 수용인원 한계로 인한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 하에 분반 추가 개설 또는 분반별 수강정원 감축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전공교육과정 폐강) ① 전공교육과정의 폐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과목의 폐강 기준은 학과의 입학정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구분	입학정원 30명 이하	입학정원 80명 이하	입학정원 81명 이상
폐강기준	8명 미만	10명 미만	15명 미만

2. 전공 교직교과교육영역 과목 및 군사학 과목, 외국인 교환학생전용 과목은 폐강하지 아니한다.

3. 학교현장실습(중등),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폐강기준을 6명 미만으로 한다.(1학기 학교현장실습(중등)은 10명 미만) (개정 2021.06.10.)

4. 학과/부서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과목의 폐강기준은 10명으로 한다. 선발정원 소수학과와 학교현장실습의 폐강기준은 달리 적용한다. (개정 2021.06.10.)

5. 계절학기 폐강기준은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기준 10명 미만으로 한다.

6. 과목 특성상 소수인원으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교무처장이 승인하는 경우 위의 폐강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공과목의 최종 평가기준 시점은 개강 1주차 수강정정 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2조(강의시간 입력) ① 강의시간의 단위는 75분 또는 50분으로 한다.

② 이론 3학점 3시간 교과목은 75분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주 2일에 걸쳐 편성하여야 한다.

③ 특정 요일에 강의가 몰려 학생들의 수업선택에 지장이 없도록 요일별 전공과목 강의시간배정비율은 15~25% 범위 내로 배정하도록 한다.

④ 전임교원의 3시간 연강은 불허한다. 다만 실습시간이 포함된 과목 및 금요일 수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전임교원의 연강을 허용한다,

⑤ 비전임교원이 주당 3시간 이론수업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학부블록시간표의 연강허용시간대에 한해 연강을 허용한다. (개정 2021.02.05.)

제13조 (강의실 배정) ① 학사팀은 매년 전공 강의 개설 강좌수 및 수강인원 규모를 고려하여 학과별 우선배정 강의실을 정하여 공지한다. 강좌당 수강정원이 적은 전공에 대해서는 대형강의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공강의는 지정된 전공강의실에 요일별 다양한 시간대를 활용하여 배정하고, 실습수업의 경우에도 전공에 소속된 실습실을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③ 학교공용 PC실습실을 강의실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강의계획서상 PC실습필수 과목이면서 전공 전용PC실습실이 없는 경우에만 강의배정이 가능하다. 이론과목 및 전공 전용PC실습실이 있는 경우에는 강의실로 신청할 수 없다.

④ 대형강의실은 대형강의 우선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수인원 강좌를 선 배정했다라도 대형강의 운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강의실은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강의계획서 입력)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주별 강의 계획, 평가계획, 참고문헌, 교과목을 통한 개발역량 등이 기재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전산입력을 마쳐야 하며, 학생들은 이를 조회, 출력하여 수강신청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와 일치하게 수업을 진행해야 하며,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수강생에게 충분히 고지하도록 한다.

③ 윤·공강으로 운영되는 강의는 강의계획서에 주차별 또는 요일별 교강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외국어강의는 반드시 해당 외국어(ex,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로 작성해야 한다.

⑤ 실험실 안전교육 대상 실험실습교과목은 1주차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첫주차 강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⑥ 정규수업내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강의계획서에 특강 주제 및 강사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학기·교과목당 특강료 지원은 예산팀이 정한 학과 예산사용지침을 준용한다.

⑦ 강의계획서의 필수입력사항을 전산으로 입력 완료해야 출석부를 출력할 수 있다.

제15조(수업일수 및 출석점검)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교과 운영상 필요할 경우 학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학점당 수업시간을 준수하여 집중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절학기는 매학기 15일 이상으로 하며, 총 수업시간은 정규학기 수업시간과 동일하여야 한다.

③ 교수는 강의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학생이 학칙시행세칙 제28조 ②항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출석인정사유	구체적 기준
1. 신병	(1) 등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의사 소견이 있거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고의 경우(2주 이내 결석만 인정함) *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제출 (2) 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의사가 판단한 기간 (제1군~제4군 전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간염, 일본뇌염, 수두, 홍역, 결핵, 독감 등)
2. 직계가족의 사망	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 시 7일(휴일 포함), 조부모 사망 시 3일(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제출
3. 교육실습	교원양성센터에서 발급한 교육실습확인서에 의함

4. 졸업예정자 (최종학기)의 조기취업	학과 및 학사팀 승인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최종학기)로 5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국내 사업장에 취업한 자 또는 1년 이상 전일제 근무자로 해외 사업장에 취업한자 * 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생용) 제출
5. 공식행사 참석 또는 총장이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식행사 인정 범위> (1)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 행정부서 기관장 이상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참석 확인증을제출하는 경우 (2) 졸업여행 및 졸업앨범 촬영 기간 (3) 정부기관 및 기타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석(공문확인) * 위에 명시하지 않은 공식행사인 경우라도 관련공문을 확인하여 담당 교강사가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⑤ 정해진 수업일수를 준수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학사력에 없는 휴강, 결강이 있을 경우 학부장·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휴·보강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학기 내에 보강하여야 한다.

제16조(전공교육과정 평가기준) 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평가기준은 우리대학 학칙시행세칙 제42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다음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P/F교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교수의 학생 분담 지도로 상대평가가 어려운 교과목
- 1개의 공동 과제 수행으로 그 결과물에 대하여 상대평가가 어려운 교과목
- 외부기관의 평가가 포함되어 상대평가가 어려운 교과목
- 진로지도 또는 외부자 특강 중심 교과목
- 그 외 상대평가가 어려운 교과목

③ 교과목의 절대평가는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 성격상 절대평가가 필요한 교과목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절대평가 과목이라도 3년 성적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절대평가를 엄정하게 시행하지 않은 교과목은 상대평가 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전공교육과정 및 수업의 질 개선) ① 개설된 모든 수업은 수강 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2회(중간, 기말) 수업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수업선택을 위해 수업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수업평가 실시 및 조치는 수업평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개설된 모든 수업의 교강사는 매 학기말 자신의 수업을 직접 분석, 평가하고 학생들의 수업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수업자가진단리포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③ 교무처장은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수업개선계획서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신설 2021.10.22.)

④ 각 전공은 4년을 주기로 학과발전계획에 따른 전공교육과정의 운영결과를 자체진단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호번호변경 2021.10.22.)

제18조(온라인 강의 활용)(조삭제 2021.10.22.)

제19조(외국어 강의) ① 외국어 강의는 P/F평가가 아닌 이론과목에 한해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수업과정을 100% 외국어로 진행해야 한다,

② 그 외 과목에서 외국어 강의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③ 어학교육 관련 과목(외국어회화·토론·연습 등의 과목)은 외국어강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외국어강의로 개설한 강좌의 강의계획서는 반드시 해당 외국어로 입력하여야 한다.

⑤ 수업평가 실시 결과 외국어운영비율에 대한 평점이 4점미만(외국어 사용 80%미만) 2회 누적인 교원은 추후 과목 개설 시 3년 간 외국어 강의 지정을 불허한다. (개정 2021.06.10.)

⑥ 전임교원이 영어강의로 처음 개설하는 과목(교원 기준)에 대해 영어강의개발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영어강의개발연구비를 수혜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최소 4개 학기 이상 영어강의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동조 제5항에 따라 외국어 강의 지정을 불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06.10.)

제20조(윤·공강 운영) ① 다음의 경우 윤·공강을 허용한다,

- 서로 다른 분야의 융합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
- 전공 학생의 진로 및 지도를 위해 소속 교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과목

- 기타 교과목 특성상 2명 이상의 교원이 공동 강의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교과목

- ② 윤·공강이 필요한 경우 주차별·요일별 강의담당 교원명 및 윤·공강 사유를 기재한 윤공강신청서를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서식 3]
- ③ 주차별·요일별 강의담당 교원명은 강의계획서 진도계획에 동일하게 명시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하며, 변경 없이 강의진행해야 한다.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채 윤·공강 계획을 변경하여 진행한 강의는 교원의 강의시간 및 강의로 산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윤·공강 과목으로 운영하는 것을 불허할 수 있다.
- ④ 윤강 또는 공강 교과목 운영 및 학생들의 성적평가 책임을 갖는 교수를 대표교수로 지정하며 대표교수만이 해당 교과목의 성적입력권한을 갖는다.
- ⑤ 1주차 오리엔테이션 또는 시험기간만 다른 교원이 담당하는 것은 윤·공강 강좌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⑥ 윤·공강에 참여한 모든 교강사에 대해 각각 수업평가를 실시하며 윤·공강 과목의 수업평가 결과는 당해 학기 교강사의 평점에 모두 반영한다. 예외적인 교과목에 대해서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평점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실습과목 운영) ① 실습시간이 포함된 과목(이론·실습병행강의 및 실험·실기·실습강의)의 경우 강의계획서에 실험·실습·실기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단, 외부현장실습과목 등 실습일지의 작성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지를 제출받아 학과 및 부서에서 보관한다. (개정 2019.10.12.)

- ② 실험실 안전교육 대상 실험실습교과목은 1주차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첫주차 강의계획 및 실습일지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다음의 경우 실험실습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교육과정개편을 통해 이론 교과목으로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 실습일지를 실습일별로 작성하지 않고 한 학기 실습을 1~2 장으로 요약·작성 한 경우
 - 단순한 학생참여활동을 실습으로 명시한 경우
 - 실습일지에 기재된 실습내용이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전공트랙 개설 및 운영)(조신설 2021.02.05.) ① 학부·학과·전공은 주제별 전공과목으로 구성된 모듈과 전공능력 및 사회수요 기반 전공트랙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모듈은 3~4개 주제별 과목그룹으로 구성하며, 전공트랙은 1개 이상의 모듈과 관련 교과목을 묶어 18학점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전공트랙(모듈 포함)을 개설하고자 하는 학부·학과·전공은 교육과정 개편 시에 '전공트랙 교육과정 개발보고서'를 제출하고 학사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전공트랙의 이수요건은 주관 학부·학과·전공에서 정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 전공트랙에 대해서는 이수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전공트랙의 이수요건 변경 및 이수자격 제한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전공트랙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재학 중 정해진 기간에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학부·학과·전공에서 정한 전공트랙 이수요건을 충족한 학생에 대해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⑥ 전공트랙 선택 전에 해당 교과목을 미리 이수한 경우 트랙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2017.6.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1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1조의 개정내용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2.0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6.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0.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9.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사항은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설교과목 교수요목(Syllabus)

교과목명	국문명			
	영문명			
학점-이론시간-실습시간	(예: 3-2-2) - -	개설학기	매년: 1학기/2학기/모든학기 격년: 1학기 홀수년/1학기 짝수년/2학기 홀수년/2학기 짝수년	
교과구분		이수단계	1학년/2학년/3학년/4학년/전학년 1-2학년/2-3학년/3-4학년 (약대)5학년/6학년/4-5학년/5-6학년	
교과목 개요 (국문)				
교과목 개요 (영문)				
학습 목표				
비고	(담당 교수진, 강의방법, P/F평가방법 등 특이사항 기재)			
주차	학습주제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소속 학부 · 학과 · 전공 전체교수 서명 날인 :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년 월 일

학과/전공명 : _____ 학부장 · 학과장 · 전공주임 : _____ (인)

_____학년도 전공졸업학점 배정 신청서

대학구분 _____ 학부 · 학과 · 전공명 : _____

제1전공(심화과정)			제1전공(다전공과정)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전공 학점 계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전공 학점 계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전공 학점 계	
									30

- ※ 전공필수학점은 편제된 전공필수과목 학점의 합과 동일해야함
- ※ 복수전공의 전공필수학점은 제1전공(다전공과정)의 전공필수학점과 동일하게 설정하며, 복수전공의 학점이 해당 학과 전공필수학점 이하일 경우 전공학점은 모두 전공필수학점으로 설정해야함
- ※ 전공 졸업학점 변경사항은 개편 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학과 · 학부 · 전공 교수회의를 통해 내년도 전공졸업학점 배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소속 학부 · 학과 · 전공 전체교수 서명 날인 :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년 월 일

학부장 · 학과장 · 전공주임 : _____ (인) 학장 : _____ (인)

담당	팀장	처장/원장	결재일
			/

윤강 및 공강 승인원

<input type="checkbox"/> 전공 <input type="checkbox"/> 교양 (√체크)	학과/전공	학년도			학기
학수번호	분반	교과목명	학점/시간	요일/시간	강의실
			/	/	
윤공강사유					
구분	<input type="checkbox"/> 윤강 <input type="checkbox"/> 공강		대표교수		

대상월	주차	총시간수	담당 시간수	교번	이름	담당 시간수	교번	이름
3월/9월	1주	(예시) 3						
	2주	3						
	3주	3						
	4주	3						
4월/10월	5주	3						
	6주	3						
	7주	3						
	8주	3						
5월/11월	9주	3						
	10주	3						
	11주	3						
6월/12월	12주	3						
	13주	3						
	14주	3						
시간계		45						

위와 같이 윤강 또는 공강을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대표교수 : _____ (인)

학부(과)장/전공주임 : _____ (인)

※ **유의사항**
 ① **대표교수** : 윤강 또는 공강 교과목 운영 및 학생들의 성적평가 책임을 갖는 교수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교수에게만 성적입력시스템 권한을 부여합니다.
 ② **주차별/요일별 강의담당 교원명**은 강의계획서 진도계획에 동일하게 명시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하며, 책임강의시간 및 급여에 반영하는 자료이므로 변경없이 강의진행을 해야합니다.
 *개강 후 담당 교강사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서를 작성,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단, 개강 후 5주차까지만 변경신청 접수를 받으니 기간 내에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 제 정 : 2017년 8월 1일
- 개 정 : 2022년 6월 1일
- 관리부서 : 기초교양대학 교학팀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한 학부의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개설한 학부의 모든 정규 교양 교과목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외의 내용은 기초교양대학장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교양 교육과정 편성방향) ① 교양 교육과정은 우리대학의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구현하고, 우리대학 인재상을 반영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② 교양 교육과정은 인간과 삶의 새로운 이해, 인간관계 형성 및 도덕적 판단능력, 현대사회를 통찰하는 식견, 비판적·창의적사고, 소통과 표현의 능력, 인문적소양 등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편성해야 하며 변화하는 학문 추세를 비롯해 사회 및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양 교육과정은 [역량중심의 교양교육체계], [교양교육의 미래지향성 강화], [융합교육 강화]를 기본원칙으로 우리대학 핵심역량을 증진시키는 교과목으로 구성해야 하며, 우리대학교의 특성화 정책을 반영할 수 있다.

제4조(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절차) ① 교양 교육과정의 개편주기는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 정책 결정 등의 부득이한 경우 기초교양대학장의 승인을 거쳐 개편할 수 있다.

② 기초교양대학은 4년을 주기로 대학발전계획에 따른 교양 교육과정의 운영결과를 자체진단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③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절차는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학부·학과·전공(이하 '학과'라 한다)에서는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관련 학습자의 요구사항 및 진로, 사회적 수요를 조사·분석한다.
2. 학부·학과·전공의 소속 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안을 수립하고,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합의된 개편안을 도출한다. 반드시 개편안을 소속 학과 교수 전원에게 공지하고 연구년 및 휴직 교수를 제외한 소속교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교양핵심 교과목에 대한 이수대상/제한 등 수강기준 및 졸업기준 변경 신청은 그룹웨어를 통해 기안문을 제출한다.
4.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안 전산 입력 후 소속교원이 날인한 교육과정개편 서류 및 관련 서류를 각 교학팀에 제출한다.
5. 기초교양대학운영위원회 심의 및 교육혁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승인 내용을 적용하고 승인결과는 각 학과로 통보한다.
6. 승인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문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요청은 1회에 한하며, 해당 미승인 건과 동일·유사한 교과목의 개편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7. 교육과정 개편은 개편 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편 승인 후 재학생에 대한 적용방안이 필요한 경우 각 학과 및 기초교양대학은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기초교양대학장 승인 및 사안에 따라 교무처장 승인 후 시행한다.

제5조(교양 교육과정 심의절차) ① 교양 교육과정 개편의 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초교양대학운영위원회 심의

2. 심의결과 통보

②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요청은 1회에 한하며, 미승인 건과 동일·유사한 교과목의 개편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제6조(교양 교육과정 개편 원칙) ① 교양 교육과정 개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해야 한다.

1. 과목 내용이 동일하면서 명칭만 변경하는 식의 개편은 지양 한다.
2. 전임교원의 우수교양강의 개발 및 담당을 권장하고, 일부 교양과목에 편중되는 강사의준율을 완화토록 한다.
3.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한 이해와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양과목을 개발한다.
4. 평생교육사 과정, 교직 기본이수과목 중 교양으로 지정된 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전환 또는 대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양 교과목 신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해야 한다.

1. 학부·학과·전공 교수회의에서는 신설과목의 교수요목 자료를 검토하고 학과 내 또는 타 학과 유사교과목이 없는 경우에만 신설한다.

2. (삭제 2021.06.10.)

3. 신설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교수요목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별지서식1]

4. 신설하는 교과목은 전임교원이 지속적으로 강의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강의 담당 전임 교원이 안식년 및 휴직일 경우 학과 차원에서 전임교원이 담당토록 하되, 곤란 시 비전임 교원의 강의를 허용한다.

5. 신규 과목 개설 시 기존과목 1:1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6. 과목 신설에 따른 전용 시설 및 비품이 필요한 경우, 혹은 실험 실습 관련 별도 예산이 필요한 경우, 관련 예산 확보 계획 및 시설 비품 확보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7. 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및 외부 재정 지원 사업 등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교과목을 우선 개설할 수 있다.

8. 교과목 이름

-교과목 이름은 띄어쓰기 없이 15자 이내로 정하며, 교과목의 특성 상 2개 학기 이상 개설해야 할 경우 로마자 I·II·III 등으로 그 선·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교과목 이름에 단어를 나열할 경우 '가운데점'으로 표기한다.

③ 교육과정 운영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교양과목은 신설 후 4년간 변경 없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과목 변경 후 2년간은 교과목명 변경, 이수학기 변경, 교과구분 변경, 학점 수 및 수업시간 수 변경 등 동일 항목의 재변경을 금지한다. 단, 과목 신설 후 4년 이내 과목 중 개설현황이나 개설여건상 과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목 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

④ 최근 3년 동안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폐강과목 포함)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년간 폐지를 보류할 수 있다.

⑤ 교양과목은 모든 학기 개설과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개설을 승인하는 교과목, 과목 특성상 모든 학기 개설이 필요한 과목 등은 기초교양대학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모든 학기 개설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5.)

제7조(교양 교육과정 성적기준)(조삭제 2021.06.10.)

제8조(교양 교과목 학점 및 수업시간 설정)

①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동안 15시간 이상의 수업(주당 1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 과목은 1학기 동안 30시간 이상(주당 2시간)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② 교양교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학점 또는 2학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교양 교육과정 적용 및 운영) ① 교양 교육과정의 적용 및 운영은 기초교양대학 교학팀에서 담당한다.

- ② 교학팀은 매 학기 개설현황 및 운영결과를 기초교양대학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9.3.6.)
- ③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높이고 교육내실화, 교육관련 지표 개선을 위해 분반기준, 폐강기준 등 학사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④ 강의 중 영상 시청 등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상 전체를 시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개강 후 담당 교 강사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작성,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3.6.)

제9조의2(교양 교과목 담당교수 선정) (신설 2022.6.1.) ① 교양 교과목의 담당교수 선정은 해당과목 주관학과(부)장 추천에 의하여 기초교양대학장이 선정한다

- ② 기초교양대학 소속 전임교원은 해당 소속의 수업을 우선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교양 교과목은 주관학과(부)의 전임교원이 반드시 1개 분반 이상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기타 교양 교과목의 담당교수 선정에 대한 사항은 기초교양대학장이 정한다.

제10조(교양 교육과정 개설학점 및 분반기준) ① 교양 교육과정 개설학점은 재학생의 균형적인 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교양 교육과정 이수체계를 완수하는데 적절하도록 기초교양대학장이 정한다.

② 분반 개설 기준

1. 교과목 개설 분반개수는 최근 3년 이내 해당 과목 평균 수강인원을 교과 유형별 최소 수강인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수점이하 반올림)을 기준으로 하며 교과 유형별 최소 수강인원은 아래와 같다. 다만 3레벨 교과목은 추가 분반을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02.08.)

레벨	교과수준	최소수강인원
3	3레벨	-
2	2레벨	40명
1	1레벨	60명

- 2. 개설강좌의 수강정원은 교과 유형별 최소 수강인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 3. 실험·실습·실기실의 수용인원 한계로 인한 경우 분반 추가 개설 또는 분반별 수강정원 감축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교양 교육과정 폐강) ① 교양 교육과정의 폐강 기준은 학칙 시행세칙 제21조(폐강 및 분반)에서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21.06.10.)

- 1. 폐강기준에 해당하는 교양 과목 및 담당 교원 미정인 교과목은 해당학기가 개강하기 전 기초교양대학에서 일괄 폐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수 인원으로 개설이 필요한 경우 기초교양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폐강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7.5./2019.3.6./2020.02.08./2021.06.10)
- 2. 과목 특성상 소수인원으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기초교양대학장이 승인하는 경우 위의 폐강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7.5.)
 - 군사학 및 안보학 관련 교과목
 - 외국인만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 (개정 2018.7.5.)
 - 대학이 정하는 교내외 사업 관련 예산 지원 교과목
 - 외부 지원 사업 관련 교과목
 - 재직자전형 관련 교과목
 - 교직 기본 이수 영역 교과목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1.06.10.)

3. 교양과목의 최종 폐강기준 시점은 개강 1주차 수강정정 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2조(강의계획서 입력 및 출석부)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주별 강의 계획, 참고문헌 등이 기재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전산입력을 마쳐야 하며, 학생들은 이를 조회, 출력하여 수강신청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② 강의계획서를 전산 입력하여야 출석부를 출력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일수 및 출석점검)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교과 운영상 필요할 경우 학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학점당 수업시간을 준수하여 집중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절학기는 매학기 15일 이상으로 하며, 총 수업시간은 정규학기 수업시간과 동일해야 한다.

③ 교수는 강의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학생이 학칙시행세칙 제28조 ②항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출석인정사유	구체적 기준
1. 신병	(1) 등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의사 소견이 있거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고의 경우(2주 이내 결석만 인정함) *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제출 (2) 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의사가 판단한 기간 (제1군~제4군 전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간염, 일본뇌염, 수두, 홍역, 결핵, 독감 등)
2. 직계가족의 사망	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 시 7일(휴일 포함), 조부모 사망 시 3일(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제출
3. 교육실습	교원양성센터에서 발급한 교육실습확인서에 의함
4.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	학과 및 학사팀 승인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최종학기)로 5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국내 사업장에 취업한 자 또는 1년 이상 전일제 근무자로 해외 사업장에 취업한 자 * 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생용) 제출
5. 그 밖의 공식행사 참석으로 인해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개인사정은 인정하지 않음	<공식행사 인정 범위> (1)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 행정부서 기관장 이상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참석 확인증을제출하는 경우 (2) 졸업여행 및 졸업앨범 촬영 기간 (3) 정부기관 및 기타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석(공문확인) * 위에 명시하지 않은 공식행사인 경우라도 관련공문을 확인하여 담당 교강사가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⑤ 정해진 수업일수를 준수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학사력에 없는 휴강, 결강이 있을 경우 학부장·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휴·보강 계획서[별지서식3]를 제출하고, 해당 학기내에 보강하여야 한다.

제14조(교양 교육과정 및 수업의 질 개선) ① 개설된 모든 수업은 수강 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2회(중간, 기말) 수업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수업선택을 위해 수업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수업평가 실시 및 조치는 수업평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개설된 모든 수업의 교강사는 매 학기말 자신의 수업을 직접 분석, 평가하고 학생들의 수업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수업자가진단리포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제15조(온라인 강의 활용) ① 수강생이 많은 교양과목에 대하여 사이버강의 개설을 할 수 있으며 사이버강의는 교수학습센터 학기별 교과목 개발 공모에 선정된 교과에 한하여 개설한다.

② 사이버강의로 운영하는 과목은 오프라인 분반 개설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7.28.)

③ 온·오프라인 혼합수업은 SM-BL 교수법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하며, 한 학기에 교수 1인당 2개 교과목 이내, 개설 분반수는 1개 분반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2개 분반 이상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수법공모교과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온라인 강의시간은 중복하여 책임강의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휴·결강에 따른 보강은 오프라인 보강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e-강의를 촬영하여 보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e-강의는 2주에 한한다. (총15주 수업 기준 2주 초과는 불가함. 주1회 수업의 경우 총2회, 주2회 수업의 경우 총4회)

⑤ e-강의 보강은 교강사가 직접 강의하거나 제작에 참여한 콘텐츠를 SnowBoard 강의실에 등록하여 실시하는 것만 인정하며, 그 외 동영상 및 강의록 문서 게시는 강의 보충자료 제공일 뿐 보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시간 수업 : 동영상 강의 25분 인정. 75분 수업 : 동영상 강의 40분 인정)

제16조(외국어 강의) ① 외국어 강의는 P/F평가가 아닌 이론과목에 한해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수업과정을

100% 외국어로 진행해야 한다,

- ② 그 외 과목에서 외국어 강의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초교양대학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7.28.)
- ③ 어학교육 관련 과목(외국어회화·토론·연습·작문 등의 과목)은 외국어강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항 번호 정정 2018.7.28.)
- ④ 외국어강의로 개설한 강좌의 강의계획서는 반드시 해당 외국어로 입력해야 한다. (항 번호 정정 2018.7.28.)
- ⑤ 수업평가 실시 결과 외국어운영비율에 대한 평점이 4점미만(외국어 사용 80%미만) 2회 누적인 교원은 추후 과목 개설 시 3년 간 외국어 강의 지정을 불허한다. (항 번호 정정 2018.7.28./개정 2021.09.14)

제17조(윤·공강 운영) ① 다음의 경우 윤·공강을 허용한다,

- 서로 다른 분야의 융합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
 - 전공 학생의 진로 및 지도를 위해 소속 교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과목
 - 기타 교과목 특성상 2명 이상의 교원이 공동 강의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교과목
- ② 윤·공강이 필요한 경우 주차별·요일별 강의담당 교원명 및 윤·공강 사유를 기재한 윤공강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초교양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서식 3]
 - ③ 주차별·요일별 강의담당 교원명은 강의계획서 진도계획에 동일하게 명시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하며, 변경 없이 강의진행해야 한다.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채 윤·공강 계획을 변경하여 진행한 강의는 교원의 강의시간 및 강의로 산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윤·공강 과목으로 운영하는 것을 불허할 수 있다.
 - ④ 윤강 또는 공강 교과목 운영 및 학생들의 성적평가 책임을 갖는 교수를 대표교수로 지정하며 대표교수만이 해당 교과목의 성적입력권한을 갖는다.
 - ⑤ 1주차 오리엔테이션 또는 시험기간만 다른 교원이 담당하는 것은 윤·공강 강좌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⑥ 윤·공강에 참여한 모든 교강사에 대해 각각 수업평가를 실시하며 윤·공강 과목의 수업평가 결과는 당해 학기 교강사의 평점에 모두 반영한다. 예외적인 교과목에 대해서는 기초교양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평점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 (실습과목 운영) ① 실습시간이 포함된 과목(이론·실습병행강의 및 실험·실기·실습강의)의 경우 강의계획서에 실험·실습·실기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단, 외부현장실습과목 등 실습일자의 작성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지를 제출받아 학과 및 부서에서 보관한다. (개정 2020.02.08.)

- ② 실험실 안전교육 대상 실험실습교과목은 1주차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첫주차 강의계획 및 실습일지에 반영해야 한다.
- ③ 다음의 경우 실험실습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교육과정개편을 통해 이론 교과목으로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 실습일지를 실습일별로 작성하지 않고 한 학기 실습을 1~2 장으로 요약·작성 한 경우
 - 단순한 학생참여활동을 실습으로 명시한 경우
 - 실습일지에 기재된 실습내용이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2017.8.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7.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7.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3.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6.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9.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6.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교과목 교수요목 (Syllabus)

교과목명	국문명			
	영문명			
학점-이론시간-실습시간	(예: 3-2-2) - -	개설학기	매년: 1학기/2학기/모든학기 격년: 1학기 홀수년/1학기 짝수년/2학기 홀수년/2학기 짝수년	
교과구분		이수단계 (복수가능)	1학년/2학년/3학년/4학년 (약대)5학년/6학년/전학년	
교과목 개요 (국문)				
교과목 개요 (영문)				
학습 목표				
비고	(담당 교수진, 강의방법, P/F평가방법 등 특이사항 기재)			
주차	학습주제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소속학과/학부/전공 전체교수 서명 날인 :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년 월 일

학과/전공명 : _____ 학과장/학부장/전공주임 : _____ (인)

담당	팀장	처장/학장	결재일
			/

윤강 및 공강 승인원

<input type="checkbox"/> 전공 <input type="checkbox"/> 교양 (√체크)	학과/전공	학년도			학기
학수번호	분반	교과목명	학점/시간	요일/시간	강의실
			/	/	
윤공강사유					
구분	<input type="checkbox"/> 윤강 <input type="checkbox"/> 공강		대표교수		

대상월	주차	총시간수	담당 시간수	교번	이름	담당 시간수	교번	이름
3월/9월	1주	(예시) 3						
	2주	3						
	3주	3						
	4주	3						
4월/10월	5주	3						
	6주	3						
	7주	3						
	8주	3						
5월/11월	9주	3						
	10주	3						
	11주	3						
	12주	3						
6월/12월	13주	3						
	14주	3						
	15주	3						
시간계		45						

위와 같이 윤강 또는 공강을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대표교수 : _____(인)

학부(과)장/전공주임 : _____(인)

※ 유의사항

- ① 대표교수 : 윤강 또는 공강 교과목 운영 및 학생들의 성적평가 책임을 갖는 교수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교수에게만 성적입력시스템 권한을 부여합니다.
 - ② 주차별/요일별 강의담당 교원명은 강의계획서 진도계획에 동일하게 명시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책임강의시간 및 급여에 반영하는 자료이므로 변경없이 강의진행하여야 합니다.
- *개강 후 담당 교.강사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서를 작성,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단, 개강 후 5주차까지만 변경신청 접수를 받으니 기간 내에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자율설계전공 운영 내규

- 제 정 : 2020년 1월 4일
- 개 정 : 2022년 10월 26일
- 관리부서 : 교무처 학사팀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등에서 정한 학생자율설계전공 운영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학생자율설계전공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3~6학기 재학생 및 4~7학기 휴학생 중 다음 학기 재학 예정인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2.03.15.)

제3조(신청방법) 학생자율설계전공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학사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2022.10.26.)

1. (삭제 2022.10.26.)
2. (삭제 2022.10.26.)
3. (삭제 2022.10.26.)
4. (삭제 2022.10.26.)

제4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승인) ① 학생자율설계전공 교육과정은 최소 2개 이상 전공의 모듈을 포함하여 총 60학점 이상으로 구성하되, 신청 이전에 이수 완료한 교과목은 최대 18학점 이내로만 포함한다. (개정 2021.02.05./2022.10.26.)

- ② 학생자율설계전공 교육과정은 전공 교과목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 학생자율설계전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학점 범위 내에서 교양교과목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0.07.24.)
- ③ 국내외 현장실습 교과목은 학생자율설계전공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 학생자율설계전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다. (호번호변경 2020.07.24.)
- ④ 교과목 개설 학부(과)는 수강제한이 필요한 특수목적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학생자율설계전공 이수 교과목 편성 및 수강지도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호번호변경 2020.07.24.)
- ⑤ 학생이 설계한 학생자율설계전공은 학생자율설계전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호번호변경 2020.07.24.)
- ⑥ 학생자율설계전공 교육과정으로 편성한 교과목이 개설 학부(과)의 교육과정개편으로 인하여 변경·폐지되었거나 자체적 교육과정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생자율설계전공의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변경신청서를 학사팀에 제출하여 학생자율설계전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변경 2020.07.24./개정 2021.01.15.)
- ⑦ 융합교육 지원 사업을 위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신설 2021.01.15.)

제5조(교육과정의 이수) ① 졸업기준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

- ② 학생자율설계전공 교육과정에 편성한 교과목을 학생자율설계전공생으로 선발되기 이전에 이수하였더라도 해당 전공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 ③ 학생의 제1전공, 복수전공, 부전공과정 및 교양 교육과정과 학생자율설계전공 교육과정 간에 최대 9학점까지 중복학점으로 인정한다.
- ④ 국내외 교류학점을 학생자율설계전공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학생자율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허용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는 학칙 제47조에 따른다.

제6조(졸업이수요건) 졸업이수요건은 졸업기준학점을 충족하고 전공 설계 시 승인받은 별도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2.10.26.)

- ① (삭제 2022.10.26.)
- ② (개정 2022.03.15./삭제 2022.10.26.)
- ③ (신설 2022.03.15./삭제 2022.10.26.)

제7조(학위의 수여) 학생이 제1전공 및 학생자율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학생자율설계전공의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해당 내역은 학적부와 증명서에 기재한다.

제8조(학생자율설계전공 포기) ① 학생이 이수중인 학생자율설계전공의 포기를 희망할 경우 포기원을 학사팀에 제출한다.

② 학생자율설계전공을 포기한 학생은 재신청이 불가하다.

③ 학생자율설계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이 제적되면 학생자율설계전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입학하더라도 이수할 수 없다. 단, 학생자율설계전공 학점이수를 완료하고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 시 별도 심의한다. (신설 2022.03.15.)

제9조(학생자율설계전공위원회) ① 학생자율설계전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자율설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자율설계전공생 선발
2. 학생자율설계전공 교육과정 편성과 변경
3. 학생자율설계전공 졸업요건과 학위명
4. 그밖에 학생자율설계전공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학생자율설계전공 지도교수) ① 학생자율설계전공의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제1전공 소속 전공 교원에 한하지 않는다.

② 학생자율설계전공 지도교수는 학생자율설계전공 신청 학생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수하는 과정 중의 모든 사항을 지도한다.

③ (삭제 2021.09.17.)

④ 학교는 학생자율설계전공 지도교수에게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비 및 학생 지도에 대한 지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9.17.)

제11조(전공 폐지)(조신설 2021.09.17.) ① 학교는 매 학기 이수자 현황을 점검하여 직전 2년간 이수 중인 학생이 없는 학생자율설계전공에 대하여 폐지 예정을 공고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한다.

② 향후, 폐지된 학생자율설계전공과 유사 또는 동일한 전공을 개설 신청하는 경우 재개설을 승인할 수 있으나, 그 유사도에 따라 연구비 및 장학금을 미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20.01.0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1.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0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9.1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생자율설계전공 학사학위의 종류 (신설 2022.10.26.)

학생자율설계전공	학위종류 (전공)
뇌·인지과학전공	뇌·인지과학사(뇌·인지과학전공)
미디어광고마케팅전공	미디어광고마케팅학사(미디어광고마케팅전공)
영상문화커뮤니케이션전공	영상문화커뮤니케이션학사(영상문화커뮤니케이션전공)
K-POP산업경영전공	문화산업학사(K-POP산업경영전공)
북한과통일학전공	북한과통일학사(북한과통일학전공)
영상예술경영전공	영상예술경영학사(영상예술경영전공)
인권학전공	인권학사(인권학전공)
IP·콘텐츠전공	IP·콘텐츠학사(IP·콘텐츠전공)
과학저널리즘전공	과학저널리즘학사(과학저널리즘전공)
스마트그린·케어공학전공	스마트그린·케어공학사(스마트그린·케어공학전공)
게임콘텐츠디자인전공	게임콘텐츠디자인학사(게임콘텐츠디자인전공)
글로벌융합디자인전공	글로벌융합디자인학사(글로벌융합디자인전공)
바이오3D재료공학전공	바이오3D재료공학사(바이오3D재료공학전공)
빅데이터비즈니스융합전공	빅데이터비즈니스융합학사(빅데이터비즈니스융합전공)
의류비즈니스전공	의류비즈니스학사(의류비즈니스전공)
젠더학전공	젠더학사(젠더학전공)
인공지능·IOT공학전공	인공지능·IOT공학사(인공지능·IOT공학전공)
미래융합자동차공학전공	미래융합자동차공학사(미래융합자동차공학전공)
비즈니스애널리틱스전공	비즈니스애널리틱스학사(비즈니스애널리틱스전공)
언어학전공	언어학사(언어학전공)
예술창작프로듀싱전공	예술창작프로듀싱학사(예술창작프로듀싱전공)
빅데이터전공	빅데이터학사(빅데이터전공)